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제22차 위원회 -

2024. 9. 25.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22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개최 계획(안)

1. 개요

- 일 시 : '24. 9. 25.(수), 10시~12시
- 장 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5 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
- 참석대상 : 위원장, 본위원, 언론사, 사무국 직원 등 70여명
- 주요내용
 - 제3기 교체대상 위원 위촉장 수여식
 - 안건 심의·보고(5건)
 - (심의) 수입 플라스틱 조화 사용 자제 권고(안)
 - (보고)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 방안
 - (보고) 농수산물식품 정부 인증제도 정비방안
 - (보고) 지역특화 식품산업 지도(map) 제시
 - (보고) 임업의 활성화 및 재해예방을 위한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 방안

2. 세부 일정(안)

일 정	주 요 내 용	비 고
10:00~10:05 (5')	○ 안내 및 국민의례	총괄기획팀장
10:05~10:10 (5')	○ 참석자 소개 및 성원보고	
10:10~10:20 (10')	○ 위촉장 수여식 및 사진 촬영	
10:20~10:25 (5')	○ 전차 회의 결과 보고	
10:25~10:30 (5')	○ 위원장 인사말씀 및 개회선언	위원장
10:30~10:50 (20')	○ 특별주제 발표 - 지역특화 식품산업 지도(map) 관련 주제발표	장관식분과장
10:50~11:50 (60')	○ 안건 심의 및 보고 5건	각산하위원장
11:50~12:00 (10')	○ 기타 사항 논의 및 폐회 - 논의 정리, 차기 본회의 일정 등	위원장
12:00~13:00 (60')	○ 오 찬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위원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장	태	평
위 원	기획재정부장관	최	상	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	미	령
	해양수산부장관	강	도	형
	국무조정실장	방	기	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	유	경
	농협중앙회장	강	호	동
	산림조합중앙회장	최	창	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회장	최	홍	식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이	승	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이	숙	원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노	만	호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김	태	훈
	한국수산회 회장	정	영	훈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회장	안	창	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박	정	희
	한국4-H중앙연합회 회장	김	기	명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회장	박	다	정
	건국대 식품유통공학과 교수	김	민	경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김	용	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김	종	덕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	김	창	길
	전남대 해양생산관리학과 교수	김	태	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김	한	호
	前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류	방	란
	보성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문	병	완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우	수	영
	서울대 식품동물생명공학부 교수	이	기	원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장	판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한	두	봉

목 차

○ 전 차 회의 결과 보고	1
----------------------	---

〈심의 안건〉

○ 수입 플라스틱 조화 사용 자제 권고(안)	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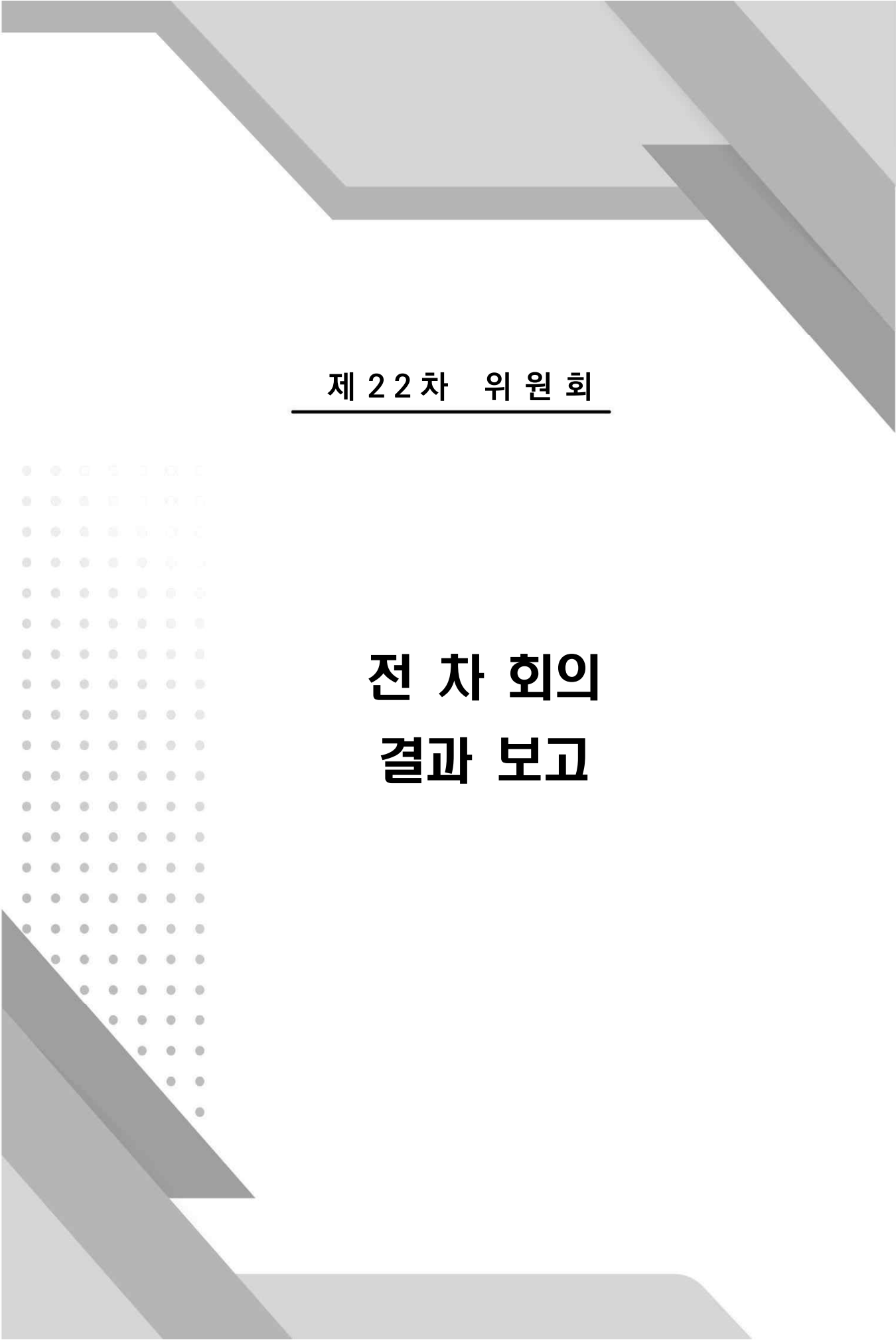
〈보고 안건〉

○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 방안	23
------------------------	----

○ 농수산물식품 정부 인증제도 정비방안	43
-----------------------------	----

○ 지역특화 식품산업 지도(map) 제시	61
------------------------------	----

○ 임업의 활성화 및 재해예방을 위한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방안	103
---	-----



제 22 차 위 원 회

전 차 회의
결과 보고

회 의 명	제21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주관기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개최일시	2024년 7월 5일(금) 13:20 ~ 15:50
개최방식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청양군청 대회의실 / 대면회의
참석명단	위원장 : 재직 1명, <u>참석 1명</u> 당연직위원 : 재직 5명, <u>참석 3명</u> 위촉직위원 : 재직 24명, <u>참석 13명</u> (참고) 참석자 명단

진행순서

1. 전 차 회의 결과 보고(서면)
2. 신규 위촉위원 위촉장 수여식(최흥식 위원, 박정희 위원, 김기명 위원)
3. 안건 보고 및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4. 폐회

상정안건

1. (보고)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결과

<농어촌 삶의 질 우수사례 발표>
① (종합지수) 청양군 삶의 질 우수사례 발표 ② (문화·공동체 영역) 홍성군 삶의 질 우수사례 발표 ③ (환경·환경 영역) 진안군 삶의 질 우수사례 발표

2. (보고) 육상양식장 표준시설 개발방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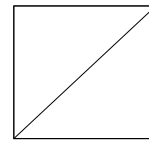
< 의결 및 결정사항 >

1. (보고)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결과 : **원안 접수**
2. (보고) 육상양식장 표준시설 개발방안(안) : **원안 접수**

제 22 차 위 원 회

심 의 안 건
(1 건)

공 개



의안번호	제2024-5호
심 의 연 월 일	2024. 9. 25. (제 22 회)

의
결
사
항

수입 플라스틱 조화 사용 자제 권고(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 출 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장 태 평 (농어촌분과위원회 위원장) (김 창 길)
제출 연월일	2024. 9. 25.

1. 의결주문

- 「수입 플라스틱 조화 사용 자제 권고(안)」에 대한 의결

2. 제안이유

- 수입 플라스틱 조화는 합성섬유로 제작·유통되어, 소각·매립 또는 풍화 과정에서 탄소배출과 미세플라스틱 용출 등 환경오염 유발
- 또한, 일부 수입·유통업체들은 화학 등에 생화와 조화를 섞은 상품을 유통하고 있어 국내 화훼시장 유통 질서 교란
- ☞ 환경오염 유발 플라스틱 조화 사용 자제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생화 사용의 촉진 및 화훼산업의 발전에 기여

3. 주요내용

- 정부의 플라스틱 조화 사용 자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생화 사용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필요성 제기
- 지자체의 조례 제정 등 자체적 노력과 지역 관련 주체와의 협력을 통한 플라스틱 조화 사용 감축 노력 촉구
- 화훼업계의 건전한 화학 유통문화를 위한 자발적 참여와 생화 사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 제기

4. 참고사항

- 농어업위 - 화훼생산자단체 간담회에서 정책 필요성 제기('24.7.25)

의결안건

수입 플라스틱 조화 사용 자제 권고(안)

2024. 9. 25.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수입 플라스틱 조화 사용 자제 권고(안)>

우리나라의 조화 수입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1,531만 달러로 연평균 2,211톤이 수입된다. 수입된 조화는 주로 상업적 및 가정용 장식, 화환 등으로 사용되며 국내 화훼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합성수지와 철심으로 이루어진 플라스틱 조화는 재활용이 불가하여 소각하거나 매립하여야 하고 오랜 시간 방치하면 풍화로 인하여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용출된다.

김해시에 따르면 플라스틱 조화로 인한 추정 폐기물은 전국 공원묘원에서만 연간 약 1,557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소각할 시 4,304톤의 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환경오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김해시, 고양시, 창원시, 음성군 등 기초지자체와 충북, 전북 등 광역지자체에서는 현재 공원묘역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 근절과 생화 사용 촉진을 위해 홍보와 캠페인을 진행하여 탄소중립 실현 및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 저감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수입 플라스틱 조화 사용으로 인한 자연환경, 업체 및 사용자(국민), 화훼농가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환경친화적인 화훼소비 촉진을 위해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온실가스 및 미세플라스틱 발생 방지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고 화훼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플라스틱 조화 사용 자제를 촉구한다.
2. 중앙정부는 환경 위해성이 높은 플라스틱 조화 사용 자제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고, 생화 사용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대국민 홍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한다.
3. 지방정부는 수입 플라스틱 조화 사용이 감축되도록 조례제정 등을 노력하고 공원묘원 및 지역화훼 농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4. 화훼업체는 유통과정의 문제점을 정상화하기 위한 자발적 참여와 함께 생화 사용 생활화를 위한 합리적 가격의 생화 상품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 2024. 9. 25.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참고 1

플라스틱 조화 수입 현황

- 최근 5년의 플라스틱 인조(조화)의 평균 수입 물량은 2,211톤이며 금액은 평균 약 1,672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무역수지는 1,608만 달러 적자로 나타남

(단위 : 톤, 천 달러)

HS 코드		'19		'20		'21		'22		'23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6702 10-0000 플라스틱 인조	전체	2,318	15,830	2,092	15,778	2,288	17,671	2,419	19,034	1,940	15,306
무역수지		-15,562		-15,742		-17,573		-18,946		-15,215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자료임

HS 6702 : 인조 꽃·잎·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꽃·잎·과실로 만든 제품

10 : 플라스틱 0000 : 플라스틱

참고 2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연간 환경오염 현황

-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연간 환경오염 현황(김해시 자료)

구분	개소 수	매장기수	조화쓰레기 발생량(톤)	탄소 배출량(톤)	미세플라스틱입자 발생량
국립 묘지	11	318,606	287	793	24억 5천 만개
전국	470	1,729,887	1,557	4,304	133억 3천 만개

※ '20년 각 시·도 장사업무실태조사 제출자료

※ 국립묘지 현황 : 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4·19민주묘지, 3·15민주묘지, 5·18민주묘지, 호국원(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제주)

※ 플라스틱 조화 환경오염 실태 산출근거(연간)

- 1) 기당 조화 평균무게 150g×2묶음×평균 방문횟수 3회(설, 추석, 청명, 한식, 어버이날, 기일 등)

- 2) 플라스틱류 기준 톤당 2.7642 tCO₂ 발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에 따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 3) 플라스틱 조화 1묶음(150g)당 미세플라스틱입자 1,284개 발생(국내 조화 사용 현황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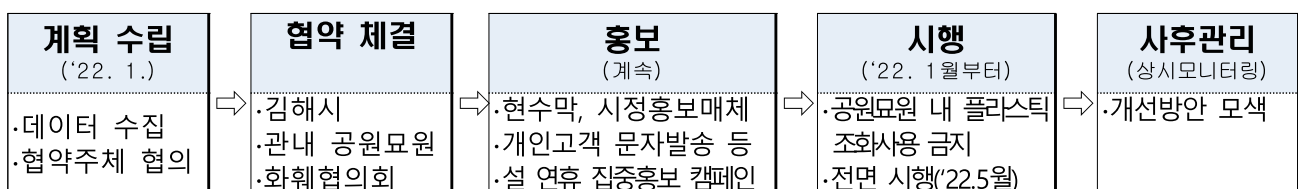
참고 3

플라스틱 조화 사용 자제 관련 정책 사례

□ 김해시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근절 정책

- (목 적) 탄소중립 실현 및 생활 속 탈 플라스틱 사회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동반성장 도모
- (사업내용) 전국 최초,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사용 근절
- (사업위치) 김해시 관내 전(全) 공원묘원 4개소
- (시행시기) 2022년 1월 설 명절부터 ~
- (사 업 비) 비예산사업
- (추진방법) 민관 업무협약
 -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사용 근절 업무협약
 -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대체방안 추진 업무협약
- (기대효과) 탄소중립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 탄소중립 실현 및 환경개선 : 플라스틱쓰레기 발생 억제, 미세 플라스틱과 탄소배출량 저감
 -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화훼산업 저변 확대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민간 ESG경영(지역사회공헌) 확대
 - 시민 환경인식 개선 및 시민참여형 환경문화 확산

○ 추진체계



참고 4

플라스틱 조화 사용 자제 관련 지자체 조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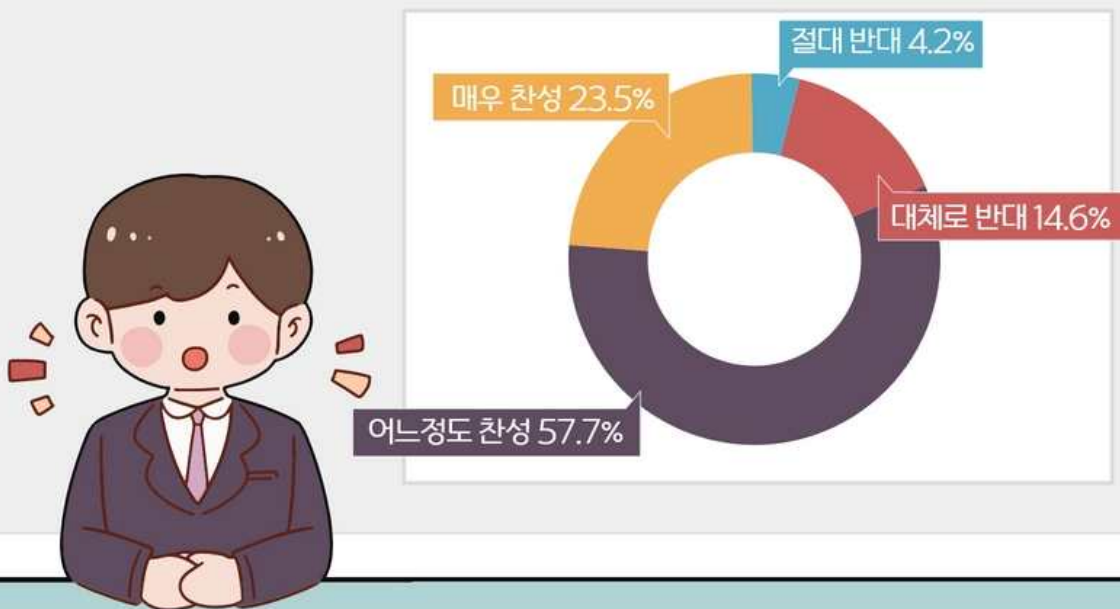
지자체 (제정일)	조례명	주요내용
김해시 (‘23.11.02)	김해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김해시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시행 - 화훼농가 지원, 생산기반시설 설치, 유통 기반 조성, 체험학습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 추진 - 플라스틱 꽃에 의한 피해 방지와 김해시 화훼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요청
고양시 (‘24.05.17)	고양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고양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 화훼 연구,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소비 촉진, 국제 꽃박람회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 - 플라스틱 꽃 환경적 피해 방지와 생화·신화환 사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요청
창원시 (‘22.10.26)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창원시 화훼산업의 지속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 화훼 생산 및 유통기반시설 조성, 소비 촉진, 박람회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 - 플라스틱 꽃에 의한 피해 방지와 신화환·생화 사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요청 - 우수화원을 착한꽃집으로 선정하여 홍보 및 다양한 지원 제공
음성군 (‘24.05.16)	음성군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음성군 화훼산업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시책 수립 및 시행 - 화훼 생산 및 유통기반시설 조성, 박람회 지원,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플라스틱 꽃에 의한 피해 방지 및 지역 화훼 우선 구매 요청 - 지역 화훼업체 및 사회적 약자기업의 화훼제품 홍보 및 구매 촉진
전북자치도 (‘24.07.05)	전북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5년)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 지원 - 화훼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 기반시설 조성, 교육 훈련 등을 통해 화훼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유통 효율화 도모 - 도내 생화 사용 촉진과 플라스틱 조화 사용 억제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환경 보호와 화훼산업 활성화 도모
충청북도 (‘24.05.17)	충청북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	- 충청북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시행계획(5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규정 - 화훼농가의 경영안정, 유통기반 조성, 소비촉진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가능 - 공공기관에 충청북도 내 생산 화훼 사용 확대 홍보 하고, 플라스틱 화훼 사용 자제 권장

인식조사 결과

2022.08.02

조화 사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생화 사용 찬성 여부) 결과입니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조화보다 생화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81.2%, '반대한다' 18.8%로 나타났습니다.
절대 반대 4.2%, 대체로 반대 14.6%, 어느정도 찬성
57.7%, 매우 찬성 23.5%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

조사대상 : 전국 성인 1,000명 (제주제외)

조사방법·기간 : 온라인 패널조사 22.6.29-7.6

의뢰기간 :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조사가권 : 이도리서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	
담당자	엄성준 농어촌정책팀장
연락처	전 화 : 02-6260-1221 E-mail : nicengirl@korea.kr

제 22 차 위 원 회

보 고 안 건
(4 건)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 방안

2024. 9. 25.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 방안 [요약]

- (추진 배경) 농업·농촌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미래 대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
 - 농업·농촌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으며, 융복합의 새로운 농업이 등장하는 등 변화하고 있음
 - 농업은 미래의 주체, 경영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구상이 시급한 상황에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농지소유 자격, 공익직불·농민수당, 조세감면 등 민감도 증가
 - 반면, 농업인 자격을 0.1ha/120만원/90일 등 최소요건으로 적용하고, 정책대상인 농업인을 자연인 개인과 경영체 단위로 불분명하게 규정하여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추진과제) 농업경영체 정의를 개편하여 농업정책의 대상과 농업 주체의 명확화·체계화 토대를 마련

과제①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

- 농업인 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격으로서 농업인과 구별하여 정책대상이 되는 농업경영체로서 “(가칭)농가경영체” 개념을 도입

과제② 농업경영체 등록제 개편

- 농업경영체 개념 재정립, 법 개정과 함께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개편하고, 농업종사자 등록 체계 별도 마련

과제③ 후속 추진과제

- 미래농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상 농업경영체의 기준 재확립
- 은퇴농업인, 예비농업인(경영체) 제도 도입
- 농업과 농산업 정의 개편과 연계하여 (가칭)농산업경영체 정의 및 개념, 지위 확립과 특성에 따른 정책지원 범위 명확화

목 차

I. 추진 배경 및 경과	29
II. 농업 · 농업인 · 농업경영체 정의와 문제점 ·	30
III. 개선 방안 및 후속 과제	35
IV. 향후 계획	37

[참고자료]

1. 농가(農家)의 정의에 대하여	38
2. 농가, 농가인구,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39
3. 농업경영체 DB의 연령, 경지규모별 분포	40
4. 프랑스, 일본 농업경영체 현황	41
5. 국가별 농업경영체 개소 및 평균 경지면적 비교	42

I.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농업·농촌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미래 대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

○ 농업·농촌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음

- 기후변화와 기상이변, 국제교역의 블록화 등 전 지구적 변화와 인구구조변화, 기술 융복합의 새로운 농업의 등장 등

○ 농업·농업인 정의와 관계된 이슈가 확산되고 있음

- 농업 정의 관련, 수직농장·푸드테크 등 농업 생산방식 다양화에 따른 전통적인 농업 개념 재정립, 가공·체험 등 융복합 경영에 대한 제도적 인정 등

- 농업인 정의 관련, 농업인 확인 규정, 농업경영체 등록요건, 공익직불금 수급자격, 각종 정책사업, 세제혜택 등

* 각종 정책 대상이 되기 위한 농지 쪼개기, 직불제 상의 모순 등 경영체 등록 급증

○ 농업은 미래의 주체, 경영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구상이 시급한 상황

- 농업구조가 영세·고령농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생존력·대응력 약화 우려

○ 환경보전·삶의질 등 농업의 공익가치 발현과 기술 융복합의 발전으로 돌파구를 마련, 이를 추진할 미래 농업경영체제의 모색과 지원의 틀 마련 필요

□ (추진 경과) 2023년 농업, 농업인, 농업경영체 정의 재정립의 필요성과 파생되는 문제 공론화, 개선방향 제시

▶ 전국 지역별 순회간담회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농업·농업인 정의와 관련한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법률상 농업경영체의 정의 재정립) 주요 정책의 대상은 개별법에 규정하도록 체계화, “농업인 = 농업경영체”로 규정되어 발생하는 혼란을 극복하여 농업경영의 기본단위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

- (다양한 농업방식의 농업 범위 포함) 농업 범위에 스마트농업, 수직 농장 등 새로운 농업방식을 포함하도록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 마련 검토
- (영농 미정착 청년·신규 귀농인 등에 대한 인정기준 마련) 청년, 신규 귀농인의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한 '예비농업인 등록제' 운영안 마련 검토
- (농외소득 개념의 재확립) 중대농을 제외한 농가는 농업소득만으로는 생계 불가능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상 농외소득 기준 적용의 실효성 및 규정 변경 검토
- (농업인 사업자등록 활성화) 농업인의 사업자등록을 적극 유도하여 정확한 소득 파악으로 농업인 증명 활용

◆ (2024)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농업경영체에 대한 법·제도적 정의 개편과 기준 재확립으로 농정 목표와 추진의 틀을 명확화

Ⅱ. 농업·농업인·농업경영체 정의와 문제점

1 농업, 농업인, 농업경영체 정의 현황

- (개요) 농업, 농업인, 농업경영체의 정의는 농지 소유·임대차, 농업 정책 대상, 조세감면 등 농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농업, 농업인, 농업경영체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지법”,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
 - 현재 우리 농업정책에서는 이들 정의를 기반으로 주요한 정책 대상을 설정하고 있음
 - 농업인과 농지 요건을 바탕으로 공익직불(기본) 수급자격을 규정, 약 3조원 규모의 예산이 지급되고 있음
 - 농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경작자인 농업인만이 농지를 소유·임차할 수 있음 (1만㎡ 미만의 상속 농지, 1천㎡미만의 텃밭 등 비농민의 예외적 소유를 허용)

□ (농업의 정의) 기본법에서 농업은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규정

- 시행령 제2조에서 농업의 범위를 세분화하였으며, ①농작물 재배업 ②축산업, ③임업에 해당함
- 현실에서 농업은 재배·사육 등 생산 이외에 투입재 등 애그리비즈니스와 농식품가공, 농촌체험·관광·휴양 등 융복합산업화가 진전되어 있음
- 특히, 스마트팜·수직농장과 바이오기술을 활용하는 푸드테크(Food Tech) 등 첨단영역이 등장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산업적 정의가 필요한 상황임

□ (농업인 정의) 기본법에서 농업인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농지법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규정

- 농업인 자격 요건은 ①1천㎡ 이상, ②농산물판매 120만원, ③농업종사 90일 중 하나가 해당하면 인정
 - 농산물 판매액 및 농업종사 90일 등 구체적인 증명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농지소유 및 임대차 여부를 주요 기준으로 활용
 - 조세와 관련해서는 농업인 자격과 함께 자경 여부가 세금 감면요건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내인 것으로 판별하고 있음
- 또한, 농업인은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농업협동조합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합원 제도가 운용되고 있음
 - 논리적으로 조합원은 1 농가·경영체 1 조합원이나, 현실적으로는 복수조합원(1농가 2조합원 : 부부, 승계자)과 의결권 없는 명예조합원 등 여러 형태가 있음

[농업·농업인·농업경영체 관련 주요 법적 정의]

개념	정의	법규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 기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기본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및 농업인확인서발급기준 고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농업생산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농지법 제2조, 시행령
농업경영체	농업인과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법 제2조 3
농업경영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	- 농지법 제2조 4
자경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	- 농지법 제2조 5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해당 조문의 내용을 재정리

[농업인 · 농업경영체 제도·정책 대상 상호 관계]

농업인	농업경영체
○ (농협조합원)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 출자금 배당소득세 비과세(2천만원), 예적금 저율과세·비과세 등 ○ 지자체 농민수당 등 수급자격 (경기, 충남, 제주) ○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원 ○ 농지소유, 양도·상속시 조세감면(자경)	○ 농림사업(정책보조사업) ○ 공익직불 수급 자격 ○ 지자체 농민수당 등 수급자격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면세유,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등 조세특례

2 문제점

□ 농업, 농업인 정의로부터 파생하는 문제

- 농업·농업인 정의 문제는 그 자체보다는 연계되어 있는 지원 제도·정책으로 부터 파생되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2020년 공익직불이 도입되고 지자체의 농가·농민 수당 지급이 확산되면서 농업인 자격 및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에 대한 현장의 민감도가 증가
 - 또한, 고령농의 농지 계승과 관련하여 소유자격, 상속·양도세 감면 등 요건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 사례가 등장

□ (경영체 분리 현상) 현재 농업인 요건과 농업경영체 등록은 공익직불 등과 연계되어 경영체 분리가 유리한 정책 환경을 제공

- 현재의 농업인 정의에서는 농업인을 “경영체”가 아닌 “종사자 개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농업인의 법적 정의 표현에 “사람”, “개인”, “종사자” 등을 혼용하고, 농업경영체 등록도 경영주 농업인, 경영주가 아닌 농업인 등으로 하여 농업인을 자연인, 개인 개념으로 적용하고 있음
- 한편, 경영체 등록을 하더라도 정책지원 혜택은 “경영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동일 필지에도 경영체를 분리하여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임
 - 2023년 기준 통계상의 농가는 99만호로 집계되나 농업경영체 등록은 184만개소에 달하여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참고자료2](#)
- 현재 “농업인=농업경영체”로 규정되었으나 농업인에 해당하는 농업종사자가 농업경영체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 (가짜 농업인 논란) 농업인 자격 요건이 0.1ha, 120만원, 90일 등 최소 기준으로 적용되어 취미·부업 수준의 손쉬운 농업 진입 가능
 - 농업인 자격 요건은 1990년대에 설정된 것으로 생업으로서 농업 규모 및 종사 여부와 상당한 격차가 있음
 - 직불 및 각종 농업인 정책 수혜가 가능한 최소규모 경영체가 증가하는 상황이 관찰되고 있음 [참고자료3](#)
 - 농정의 지향과 목표 달성 여부, 투입 재원의 누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행정력의 과다 투입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
 - 수도권 및 대도시 근교 등 0.1ha 규모 최소규모 농지 매입, 혹은 일정 규모 농지 공동 매입 후 분할을 통해 농업인 자격을 취득하는 사례들이 알려져 있음
- (후속세대 승계 및 미래 대응력 약화) 농업경영체 개념이 미약하여 농지 등 자산의 승계로 인식, 전업 특성 약화 및 세분화로 이어지고 있음
 - 농업경영체로서 농가의 지위가 없으며, 전통적인 농업경영의 세대(世代) 계승 인식도 약화된 상황임
 - 고령 경영주가 유지되면서 농업경영, 자원의 승계가 지체되고, 오히려 분리·독립·세분화가 진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특히, 현행 정책은 새로운 경영체 신설을 전제로 청년농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체의 분산을 유인(誘因)하는 상황에 있음
 - 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는 선발된 차년도 3월까지 농지 매입·임대차를 통해 새로운 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함
 - 이외에, 귀농·귀촌인 등 신규 진입 희망자의 경우 상당한 준비와 시간이 필요한 반면, 비농민의 지위에서 농업정책과 자원への 접근에 제약이 존재하고 있음

Ⅲ. 개선 방안 및 후속 과제

1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

- 자격으로서 농업인과 구별하여 정책대상이 되는 농업경영체인 “(가칭)농가경영체” 개념을 도입, 농업경영체 단위를 명확화
 - 현재 경영주 농업인과 이외의 농업인으로 구분된 지위 부여만으로는 “농가”라는 현실적 경영 단위의 위상 확보가 어려움 [참고자료1](#)
 - 농업경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발생하는 단위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을 위한 법개정 제안]

법률	현행	개정방안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개정) ■ 3. 농업경영체란 농업경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발생하는 단위로서 농가경영체와 농업법인으로 한다.

※ 농업법인 구분은 하위 법규 개편 등으로 추진

-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과 함께 경영체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지위를 부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정책 대상 재정비
 - 농업 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이들 농업 종사자 지위는 불확실한 상황임
 - 가족종사 농업인, 고용종사 농업인 등 농업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재확립

2 농업경영체 등록제 개편

- 농업경영체 개념 재편과 법 개정과 함께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개편
 -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을 “(가칭)농가경영체”와 농업법인으로 개편하고, 이에 속한 농업종사자 등록 체계를 별도로 마련
 - 새로운 정의에 따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경과조치 필요
 - 현행 ‘경영주 농업인’ 등록자를 기한을 정하여 ‘(가칭)농가경영체’로 전환하되 동일세대·동일농지의 분리 경영체를 통합하도록 우선 추진
 - * 주거는 같이하나 별도 경영을 하는 승계자 및 배우자 등은 사안별 검토 필요
 - 중장기적으로 “(농업)사업자등록”으로 확대하여 경영 체계화와 소득구조 객관화의 기반 마련

3 후속 추진과제

- ① 정책 대상 농업경영체의 기준 재확립
 - 현행 농업인의 정량적 기준[경작면적(1,000㎡), 판매금액(120만원), 종사일수(90일)]에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응하고 미래농업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 재확립
 - * 직불금 등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진입장벽 강화 필요, 고령화·과소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신규 귀농의 유입 확대 필요(기준유지) 등 의견 대립
- ② 은퇴농·예비농(경영체) 제도 도입
 - 경영이양 이후의 생활·복지 등 측면에서 은퇴농업인 제도 마련
 - * 건강보험료 감면, 교통지원, 농업인 연금, 경영이양직불 등 생산 비연계 농업인 복지 지원대상자로 법적 지위 확립

- 농업진입을 준비하는 청년 등 비농업인의 농업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예비농업인 제도 마련

* 영농준비 및 영농개시 초기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 대상 (세제지원, 실무교육 연수 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법적으로 부여

③ (가칭)농산업경영체의 정의 및 개념 도입

- 기술 융복합의 새로운 농업의 등장 등 농업의 외연 확대에 따른 농업과 농산업 정의 개편과 연계하여 (가칭)농산업경영체의 정의 및 개념, 지위 확립과 특성에 따른 정책지원 범위 명확화

* '24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 정의 신설 검토(KREI 자체 연구과제로 추진 중)

《(참고) 농업법인 제도 운영·관리 체계 개편》

- 농업법인이 농지투기 통로가 되는 등 부작용이 커지면서 사업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등 강한 규제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 반면 농업 및 농산업 주체로서 농업법인에 대한 정책적 운영·관리 기반이 취약함
- 2022년 활동 농업법인은 26,104개소이나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법인은 16,345개소로 등록률이 62.6%에 머물고 있음 [참고자료2](#)
- 또한,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들에서는 농가·개인경영체와 농업법인으로 구분하여 일관된 통계가 생성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일관된 집계치 생성도 어려운 상황임 [참고자료4](#)
- 농업법인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격으로 분류하는 것 이외에 법인 특성에 따른 제도 운영·관리 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함
- 작물재배, 사육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생산법인은 농지 접근과 집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신 농업인이 주도할 수 있는 지배구조, 사업범위 등에 대해 검토
- 농축산물 유통, 가공 및 농자재, 농촌체험·휴양 등 관련 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조세지원 및 규제특례로 활성화를 지원

IV. 향후 계획

- (후속과제 추진) 농업경영체 기준, 예비농업인, 은퇴농업인 제도 마련
- (토론회 등) 농업·농업인·농업경영체 정의 개편 관련 의견수렴 등 공론화
 - 전문가 토론회 및 농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공론화, 의견수렴

- 현행 법규에는 “농가”를 정의하지 않음. 농지개혁법 및 기본법에 관련 개념과 정의가 있었으나 폐지·삭제되어 있음
- 농지개혁법(1949년) 제3조에서는 농가를 “가주 또는 동거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단위”로 규정하였음
- 농업·농촌 기본법(1999년) 제정법 제11조에는 가족으로 구성되는 “가족농”의 생산성향상·경영안정과 농가 특성에 맞는 시책의 추진을 명시하였음
- 통계청 농업총조사에서는 농가를 1) 논이나 밭을 1천㎡이상 경작하는 가구 2)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3)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로 규정하여 법적 정의와 유사하게 적용
-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 중 소농직불 지급 대상을 “농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세대와 구별하는 실무적 개념으로 운용하고 있음
- 농가의 정의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자(=농업인)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된 가구”로 규정.
- 혈연 가족 여부와 무관하게 (주민등록에 따른) 세대를 기준으로 하나,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경영주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혼인외 세대 분리한지 3년 이내인 성인 자녀를 농가 구성원으로 포함하고 있음

참고 2

농가, 농가인구,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호, 개소, 명	2020	2021	2022	2023
농업총조사				
농가 (호)	1,035,193			
농가인구 (명)	2,314,064			
농림업조사				
농가 (호)	1,035,193	1,031,210	1,022,797	999,022
농가인구 (명)	2,314,064	2,215,498	2,165,626	2,088,781
농업법인조사				
활동법인수 (개소)	24,499	25,605	26,104	
☐ 영농조합법인	10,136	11,337	10,001	
☐ 농업회사법인	14,363	14,268	16,103	
상시종사자 (명)	119,120	120,328	123,190	
☐ 영농조합법인	44,981	49,409	44,711	
☐ 농업회사법인	74,140	70,918	78,480	
농업경영체등록(년말 기준)				
경영주+농업법인 (건)	1,745,472	1,777,659	1,827,722	1,840,082
경영주 (건)	1,730,905	1,762,530	1,811,377	1,822,483
농업법인 (건)	14,567	15,129	16,345	17,599
농업인(경영주+이외) (건)	2,478,680	2,507,670	2,554,638	2,554,935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농림어업조사 kosis.kr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업법인조사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업경영체등록정보 현황서비스

참고 3

농업경영체 DB의 연령, 경지규모별 분포

□ 분석 대상 및 자료

- 분석대상 : 2018~2022, 1회 이상 등록한 농업경영체
 - 총 2,044,059건
- 분석자료 : 문한필외(2023), 데이터기반 농정구현을 위한 농업경영체 전략적 관리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연구보고서, 전남대

□ 연령대별 농업경영체 분포

구분	농업경영체(개)	백분율(%)	누적백분율(%)
40세미만	62,968	3.08	3.08
40~50세	171,267	8.38	11.46
50~60세	459,531	22.48	33.94
60~65세	349,120	17.08	51.02
65~70세	294,312	14.40	65.42
70~75세	250,286	12.24	77.66
75~80세	220,611	10.79	88.46
80세이상	235,964	11.54	100.00
합계	2,044,059	-	

□ 재배면적별 농업경영체 분포

구분	농업경영체(개)	백분율(%)	누적백분율(%)
0.1ha미만	52,886	2.59	2.59
0.1~0.2ha	530,789	25.97	28.55
0.2~0.3ha	332,057	16.24	44.80
0.3~0.4ha	220,741	10.80	55.60
0.4~0.5ha	151,600	7.42	63.02
0.5~1.0ha	366,919	17.95	80.97
1.0~1.5ha	147,236	7.20	88.17
1.5~2.0ha	76,102	3.72	91.89
2.0~3.0ha	72,160	3.53	95.42
3.0~4.0ha	33,122	1.62	97.04
4.0~5.0ha	18,072	0.88	97.93
5.0~6.0ha	11,327	0.55	98.48
6.0~7.0ha	7,560	0.37	98.85
7.0~10.0ha	11,791	0.58	99.43
10ha이상	11,697	0.57	100.00
합계	2,044,059	-	-

참고 4

프랑스, 일본 농업경영체 현황

□ 프랑스 농업경영체 현황 (본토 기준, 개소, ha)

구분 (개소)	1988	2000	2010	2020
총계(프랑스 본토)	1,016.8	663.8	490.0	389.8
법적 형태별				
단독대표 경영체 (개인)	948.7	538.0	341.5	227.7
법인 및 기타 형태	65.5	123.6	146.1	162.1
EARL	1.6	55.9	78.6	74.9
GAEC	37.7	41.5	37.2	42.9
사실상 법인, SECA 등	14.2	3.9	1.0	1.3
민법상 법인, 기타	14.6	24.5	31.6	43.0

구분 (개소, ha)	경영체수 (개소)			경영체평균 경영면적 (ha)		
	2010	2020	변화%	2010	2020	변화ha
초소규모	156,008	107,596	-31.0	11	14	3
소규모	131,332	103,796	-20.9	43	50	7
중규모	127,729	100,898	-21.0	89	100	11
대규모	74,908	77,489	3.4	120	139	19
합계	489,977	389,779	-20.5	56	69	13

자료 : 프랑스 농업식품주권부, 농업총조사

□ 일본 농업경영체 수 현황 (전국 기준, 천개소)

구분	농업경영체	개인경영체	단체경영체	
	① + ②	①	②	법인경영체
2010	1,679	1,644	36	22
2015	1,377	1,340	37	27
2020	1,076	1,037	38	31
10/15 증감률	-18.0%	-18.5%	4.9%	25.3%
15/20 증감률	-21.9%	-22.6%	2.8%	13.3%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농업총조사

참고 5

국가별 농업경영체 개소 및 평균 경지면적 비교

□ 한국, 일본, 프랑스 농업경영체 개소 및 평균 경지면적

구분	2010년	2020년	2010/2020 변화율
농업경영체 개소수 (천개소)			
한국	1,177	1,035	-12.1%
일본	1,679	1,076	-35.9%
프랑스	490	390	-20.4%
농업경영체 평균 경지면적 (ha/개소)			
한국	1.23	1.08	-12.2%
일본	2.2	3.1	+40.9%
프랑스	56	69	+23.2%

주 : 한국은 전국 농가, 일본은 북해도를 포함한 전국 개인경영체 + 단체경영체 (3.5%), 프랑스는 본토 개인 경영체 + 조직 경영체 (41.5%)임.

자료 : 각국 농업총조사

□ 우리나라 농가, 경지면적, 경지규모별 농가수(농업총조사, 호, ha, %)

연도	농가	경지면적	수치			비중		
			1ha미만	1~5ha	5ha이상	1ha미만	1~5ha	5ha이상
2010	1,177,318	1,449,418	773,908	363,819	39,591	65.73	30.90	3.36
2015	1,088,518	1,309,787	752,077	297,076	39,365	69.09	27.29	3.62
2020	1,035,193	1,115,613	769,784	232,244	33,435	74.36	22.43	3.23
2023*	999,022	-	740,896	223,030	35,095	74.16	22.32	3.51

자료 : 통계청, 2010, 2015, 2020 농림어업총조사, kosis.kr

2023년은 농림어업조사이며, 참고사항임

주 : 농가수는 경지없는 농가를 포함한 총농가수임

농수산물식품 정부 인증제도 정비방안

2024. 9. 25.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수산물식품 정부 인증제도 정비방안 요약

1. 제언배경 및 현황

- ☐ 정부(농식품부, 해수부)는 농수산물식품 품질 향상,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식품의 품질·규격 등을 평가하여 인증제도 운영 중
 - 다만 정부 인증제도의 근거법령과 종류가 많고 복잡하며, 일관성 있게 운영되고 있지 않아 정부·업계·소비자의 제도 이해에 한계
-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부 인증제 법령 정비방안 제안 필요

2. 문제점

- ☐ (법령) 인증 관련 법령이 산재*하여 인증 대상 식품기업, 소비자 등이 내용을 쉽게 인지하기 곤란하며 제도 운영상 불균형** 발생
 - * 농식품부: 법률(6개), 11개 인증제 / 해수부: 법률(4개), 11개 인증제 운영
 - ** 인증제 별로 기준 다양: 심사기관(민간/정부), 유효기간(0~5년), 수수료(0~100만원), 심사절차(시행규칙~고시) 등
- ☐ (관리체계) 식품 품질·규격 인증제도는 농식품부, 해수부 2개 부처 및 다수의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 → 통일적 운영에 한계

3. 정비방안

- ☐ (통합법령 도입) 서로 다르게 운영되는 인증제도에 운영상 통일성 부여(누락사항 보완 등) 및 통합 법제의 단계적 도입* 검토
 - * 통합가능 인증제도 관련 법령 선별 → 통합 운영방안 마련
- ☐ (관리체계 개선) ^{가칭}농수산물식품품질인증원을 통한 통합관리 검토
 - ☞ '25년 위원회 정책연구 → 통합법률(안) 및 관리 일원화 방안 검토

목 차

I. 제안배경	49
II. 정부 인증제도 개요	50
III. 정부 인증제도 현황 및 문제점	51
IV. 정부 인증제도 정비방안	58
V. 기대효과	59
VI. 향후계획	59

I. 제언배경

- 정부(농식품부, 해수부)는 농수산물식품 품질 향상 및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의 품질·규격 등을 평가하여 인증제도 운영 중

인증대상	인증분야 목록
농림축산 분야	친환경농산물, 농산물 우수관리(GAP), 가공식품 산업표준, 전통식품 품질인증, 원산지 인증, 술 품질 인증, 식품명인인증,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동물복지축산인증, 고령친화우수식품, 무항생제
수산분야	전통식품 품질인증, 가공식품 산업표준, 원산지 인증, 품질인증,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유기가공식품, 유기수산물, 무항생제, 활성처리제, 우수천일염, 수산식품명인인증

- 다만 정부 인증제도의 근거법령과 종류가 많고 복잡하여 정부·업계·소비자 등 관계자의 제도 이해에 한계

- 또한 개별법령에 따라 인증제도를 운용함에 따라 인증제도 상호 간에 입법적 불균형(규제·지원 형평성 문제) 및 유사·중복 가능성

- 그간 인증제도의 체계화 논의는 있었으나 법령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연구*는 부재

* 「국내 식품인증제도 통합 운영(가칭 KAS 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한국식품연구원, '09.4.)가 국내 농수산물식품 인증제도 통합방안을 제시하고 법령(안)도 제안하였으나 연구시기가 오래되었고 입법의 구체적 전략 부족

- 민간 중심 인증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부 인증제 법령 정비방안 제안 필요

* 「소비자 지향적 식품 품질 표시인증제 활성화 방안(2024-2호 의안)」에서 민간 분야 식품 인증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을 제안했으며, 시범품목(한돈, 김) 추진 중

- 인증제도 통합(법률 일원화), 인증절차 등 현 인증제도 간의 비교를 통한 입법 누락사항 및 상호 불균형 사항 발굴·보완

Ⅱ. 정부 인증제도 개요

1 인증제도의 개념, 유형 및 법적 성격

- (개념) 평가대상(제품, 시설, 서비스 등)이 일정한 표준기준 또는 기술 규정 등에 적합한지 평가하여 안전성·신뢰성 등을 확인하는 제도
-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마크를 부착하게 하여 인증기관의 권위 또는 공신력으로 평가대상의 안전성·신뢰성을 확인

<식품표시제도의 유형>

1. 기본표시: 물리적 정보나 성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
* (예시) 원산지 표시, GMO 표시 등
2. 인증표시: 정보가 복잡·다양하여 내용을 상세하게 표기하는 것보다 마크 등이 적합한 경우
* (예시) 농산물품질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HACCP 등
3. 지적재산권 표시: 상표등록 및 브랜드 가치와 관련되는 표시
* (예시) 지리적표시 등

<표준과 인증>

- ▲표준: 공인된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 호환을 통한 네트워크 효과가 목적 * (예시) g, km
- ▲인증: 인증기관의 기준에 적합하면 요구사항을 충족했음을 보증 * (예시) KS인증

- (법적 성격) 인증은 인증대상에 대해 특정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강학상 확인 행위이자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2 인증제도의 효과 및 한계

- (효과) 인증대상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 효과를 통해 고품질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하는 촉매제로 기능
- (홍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제품·시설·서비스 등의 우수성 등을 확인받아 소비자 선택에 영향
- (허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출시와 유통을 금지하는 경우 등에는 사실상 강학상 허가와 동일한 성격

○ (기타) 인증제품의 우선구매, 인증받은 사업자에 대한 우선적인 정책지원 등이 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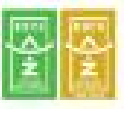
□ (한계) 정부 인증제도는 인허가적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이 통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한계 존재

○ 특히 정부 인증의 경우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인증이 유지될 수 있어 평가를 통해 유효한 인증제도만 운용할 필요

Ⅲ. 정부 인증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농식품부 소관 인증제도 도입현황

근거 법률	인증명	인증마크	인증제 개요	등록건수
식품산업 진흥법	①가공식품 산업 표준		○ (인증품목) 가용성사카린, 마가린, 설탕 등 ○ (인증방법) 서류검토, 공장 및 제품심사 ○ (인증절차) 인증신청→서류 및 현장(공장, 제품)심사→심사보고서 시험 성적서→심의→인증서교부 ○ (인증요건)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 (인증비용) 기본수수료, 심사원 출장비 및 수당, 제품시험 수수료, 시료운반·조작비	157 (농관원 우수식품 정보시스템)
	②전통식품 품질 인증		○ (인증품목) 환과류, 매주, 청국장, 국수류 등 106건 ○ (인증방법) 서류, 공장 및 제품심사 ○ (인증절차) 서류 검토→공장심사→제품심사→심의→인증서 발급 ○ (인증요건)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 가공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 향 및 색깔을 내는 전통식품의 개발과 그 계승,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 (인증비용) 기본수수료, 인증심사원 출장비, 수당, 제품 시험 수수료, 시료 운반·조작비	908 (농관원 우수식품 정보시스템)
	③대한민국 식품명인		○ (지정분야) 전통식품 및 그 외 식품분야 ○ (인증방법) 식품명인 지정 신청서 제출 ○ (인증절차) 신청 및 심사 ○ (인증요건) 해당 식품의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 (인증비용) 없음	('22) 81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④농산물우수 관리(GAP)		○ (인증품목)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하는 농산물 ○ (인증방법)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인증절차) 인증신청→서류 및 현장심사→인증서교부 ○ (인증요건)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된 것 ○ (인증비용) 50천원	('21) 11,278
친 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⑤친 환경 농산물	      	○ (인증품목) 농산물, 축산물, 가공품 ○ (인증방법)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인증절차) 인증신청→서류 및 현장심사→인증서교부 ○ (인증요건)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 (인증비용) 신청비, 인증심사원 출장비 및 심사관리비	28,225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⑥저 탄소 농축산물 인증		○ (인증품목) 61품목(식량작물 7, 채소28, 과수15, 특용작물9, 임산물2) ○ (인증방법) 서류 및 현장 심사 ○ (인증절차) 신청→서류 및 현장심사→심의→인증서 교부 ○ (인증요건) 인증 대상 품목에 해당해야 하고, 저탄소 농업기술로 생산, GAP 인증·친환경 안심농산물 인증을 사전에 취득해야 함 ○ (인증비용) 없음	('24) 1,130
농수산 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⑦원산지 인증	 	○ (인증품목)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 및 식재료(총 651품목) ○ (인증방법) 서류심사, 현장심사 ○ (인증절차) 신청→심사→심사결과 통지 ○ (인증요건) 동일한 원산지의 원재료를 95% 이상 사용, 동일한 원재료는 원산지(국가 단위)가 다른 농수산물 혼합금지 ○ (인증비용) 기본수수료, 심사원 출장비 및 수당, 시험 수수료, 시료운반·조작비	121 (농관원 우수식품 정보시스템)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⑧술 품질 인증제		○ (인증품목)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등 8개품목 ○ (인증방법) 서류, 원료 및 제조장, 생산제품의 품질 등 종합적 심사 ○ (인증절차) 신청→인증기관 및 공인시험 기관 심사→심의 ○ (인증요건) 주류 제조면허를 소지한 자 ○ (인증비용) 기본수수료	197 (농관원)

동물 보호법	⑨ 동물복지 축산인증		○ (인증품목) 산란계, 양돈, 육계, 젖소, 한육유, 염소 등 ○ (인증방법) 서류, 현장심사 ○ (인증절차) 인증신청→서류심사→현장심사→인증서교부 ○ (인증요건)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오리 농장 ○ (인증비용) 신청비(10만원), 인증심사원 출장비	470 (검역본부)
고령친화 산업 진흥법	⑩ 고령친화 우수식품지정		○ (인증품목) 주류, 특정 연령 대상 식품,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식품 외 ○ (인증방법) 신청 및 심사 ○ (인증절차) 지정신청→서류심사→심사위원회→약정체결→지정서발급 ○ (인증요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혹은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 제품 ○ (인증비용) 공인 시험분석 비용, 사용성 평가 비용	163 (고령친화 산업진흥센터)
축산법	⑪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 (인증품목) 축산물(식육, 원유, 식용란) ○ (인증방법) 신청 및 심사 ○ (인증절차) 인증신청→서류 및 현장심사→인증서발급 ○ (인증요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교육 이수 ○ (인증비용) 인증심사원 출장비	('24) 8,469

2 해수부 소관 인증제도 도입현황

근거 법률	인증명	인증마크	인증제 개요	등록건수
수산식품 산업법	① 수산전통 식품		○ (인증품목) 젓갈류, 죽류, 계장류 등 47품목 ○ (인증방법)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 (인증절차) 인증신청→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인증서교부 ○ (인증요건) 국내산 원료, 품질기준 등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및 공장 입지, 작업장 등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할 것 ○ (인증비용) 기본 수수료+인증심사원 출장비+인증심사원 수당+제품시험 수수료+시료 운반·조작비	92
	② 수산식품 산업 표준 인증		○ (인증품목) 쥐치포류, 다시마가공품 등 37품목 ○ (인증방법)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 (인증절차) 인증신청→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인증서교부 ○ (인증요건) 품질기준 등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품목별 심사 기준 및 품질경영 관리, 자재 관리 등 일반심사 기준에 적합할 것 ○ (인증비용) 기본 수수료+인증심사원 출장비+인증심사원 수당+제품시험 수수료+시료 운반·조작비	67
	③ 원산지 인증		○ (인증품목) 수산가공식품, 음식점등(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인증방법)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인증절차) 인증신청→서류심사→현장심사→인증서교부 ○ (인증요건) 제품(수산가공식품)의 원재료 또는 음식점등에서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 중 95% 이상의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가 같고 원산지 표시 관련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인증비용) 기본 수수료+인증심사원 출장비+인증심사원 수당	1

	④대한민국 수산물 명인 지정		○ (지정분야) 수산전통식품명인 ○ (인증방법) 서류검토, 사실조사 ○ (인증절차) 신청서 작성 → 시·도(추천) → 적합성검토→심의 ○ (인증요건) 해당 식품의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 (인증비용) 없음	12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⑤수산물 품질 인증		○ (인증품목) 국내산 수산물 ○ (인증방법)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인증절차) 인증신청→서류심사→현장심사→인증서교부 ○ (인증요건) 품목별 품질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할 것 ○ (인증비용) 3만원	270
	⑥양식장 HACCP		○ (등록대상) 육상양식장, 가두리 및 축제식 양식장 ○ (등록방법)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등록절차) 신청→서류심사→현장심사→등록증교부 ○ (등록요건) 양식장 HACCP기준과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양식장 ○ (등록비용) 없음	431
친환경 농어업 법	⑦유기가공 식품		○ (인증품목) 마른김, 구운김, 조미김 등 ○ (인증방법)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인증절차) 인증신청→서류심사→현장심사→인증서교부 ○ (인증요건) 유기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하는 식품 ○ (인증비용)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정밀검사비	81
	⑧유기 수산물		○ (인증품목) 김, 미역, 다시마 등 ○ (인증방법)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인증절차) 인증신청→서류심사→현장심사→인증서교부 ○ (인증요건) 양식환경, 종자, 사료 등 유기수산물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식용 양식수산물 ○ (인증비용)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정밀검사비	91
	⑨무항생제 수산물		○ (인증품목) 뱀장어, 흰다리새우, 전복, 왕우렁이 등 ○ (인증방법)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인증절차) 인증신청→서류심사→현장심사→인증서교부 ○ (인증요건) 양식환경, 질병관리, 생산물의 기준 등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양식 수산동물 ○ (인증비용)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정밀검사비	33
	⑩활성 처리제 비사용		○ (인증품목) 김,미역,툇,다시마,마른김,마른미역,간미역 ○ (인증방법)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인증절차) 인증신청→서류심사→현장심사→인증서교부 ○ (인증요건) 양식관리, 가공관리 등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해조류(단순가공 포함) ○ (인증비용)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정밀검사비	0
소금산 업 진흥법	⑪우수 천일염 인증		○ (인증품목) 천일염 ○ (인증방법)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인증절차) 인증신청→서류심사→현장심사→인증서교부 ○ (인증요건) 천일염의 생산·관리 및 주변 환경, 품질 관리 등이 우수천일염생산기준에 적합한 천일염 ○ (인증비용) 800천원	2

3 현행 정부 인증제도 법제의 구성요소 및 입법체계

① 개념정의

- 인증대상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며, 지리적표시·이력추적 등 인증과 유사한 제도의 경우 용어정의 규정을 두고 있음

* (예시)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전통식품', '대한민국식품명인'에 대한 개념정의 규정 도입

② 인증대상

- 식품(전통식품, 가공식품 등 분야 또는 술·천일염 등 품목), 농수산물(친환경, 원산지, 저탄소), 시설(HACCP, 양식장), 사람(명인)을 대상으로 함

③ 인증요건 및 기준

- 인증목적에 맞추어 일정 요건을 법령에 두되, 인증기준은 기술적 기준에 해당하므로 고시로 제정*하는 경우가 대다수

* (예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인증절차

- (신청) 신청은 열려있으나 신청자격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존재
- (심사) 서류심사, 현장·공장심사, 제품심사 등 인증제도별로 검증하며 법률에서는 핵심사항을 규율하고 하위법령에 위임*

* (예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⑦ 우수관리인증의 기준·대상품목·절차 및 표시방법 등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심사는 인증제도 운용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민원 발생 소지 多

⑤ 인증사항

- 인증대상과 인증기관(해당부분 참조)을 포함하며, 유효기간 규정이 존재(유효기간 경과 전 갱신, 효력연장 규정 포함)

⑥ 사후관리

- 인증취소와 함께 조사·출입검사·자료제출·시설점검·장비점검·표식 변경 등을 통한 인증제도 관리, 승계제도* 명시

* 명인제도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인증은 대부분 대물적 처분에 해당하므로 승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나 명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

⑦ 인증기관

- 행정기관,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담당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가 존재

*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인증실무인력 규정 등이 필요

⑧ 효과

- 인증마크 등을 통해 인증사실 표기, 인증제품 우선 구매 등 적극적인 우대조치*가 있는 경우 존재

* (예시) 농식품부·해수부 장관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공공기관, 군부대, 학교, 농어업 관련 단체 등에 대해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 요청 가능

** (예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전통식품 품질 인증제품, 원산지인증식품 등에 대해 우선구매 가능

⑨ 벌칙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는 경우, 인증사실과 다른 내용을 홍보하는 경우, 미인증자가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등 벌칙

⑩ 기타 관련사항

- 수수료, 인증 취소(인증기관 취소)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청문, 인증기관 출입 검사 등 감독 규정 등

4

현행 정부 인증제도 법제의 문제점

- (법령) 인증 관련 법령이 산재하여 인증 대상 식품기업, 소비자 등이 내용을 쉽게 인지하기 곤란하며 제도 운영상 불균형 발생

①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인증제를 도입한 사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지구온난화 방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 등의 공익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구온실가스 감축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법제 구성요소가 서로 다른 위상의 법령에서 규율된 사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율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은 고시 별표에서 규율

③ 유사 인증의 구체적 내용이 상이한 사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우수관리인증 취소(기속)사유에 업종 전환·폐업 등으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품질인증의 취소) 품질인증 취소(기속)사유에 업종전환·폐업 등으로 인하여 품질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포함

「소금산업진흥법」 제42조(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 등) 우수천일염인증 유효기간 2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품질인증) 전통주 품질인증 유효기간 3년

④ 필요한 법제 구성요소가 누락된 사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 시 유효기간 규정 미비(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지리적표시 등록거절 사유가 있음에도 유효기간을 규율하여 일정기간 후 재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

※ 지리적 표시는 인증제도는 아니나 유사하게 운영되어 사례로 제시함

- (관리체계) 식품 품질·규격 인증제도는 농식품부, 해수부 2개 부처 및 다수의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 → 통일적 운영에 한계

IV. 정부 인증제도 정비방안

1 법령 정비

- 식품 품질·규격과 관련한 인증제도는 통합법률 하나로 규율하는 방안을 단계적 모색('25년 위원회 정책연구→법률안 마련 추진)
- 통합가능한 인증제도 법령 선별 → 통합 법률안(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 마련하여 부처에 제안

<정비방안> : 법령 비교를 통해 누락 법제 요소 식별 등 불균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통일성 제고

- ①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한 기술적 사항을 고시에서 규율하더라도 법률의 직접적·구체적 위임규정에 따라 규율하도록 정비
- ② 동일한 법제 구성요소(인증대상, 기준, 절차,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인증취소 등)는 동일한 위상의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에서 규율
- ③ 유사한 인증제도의 경우 법제 구성요소를 유사하게 규율
 - * (예시)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주기를 3년 → 4년으로 개정('23.10월) 하여 일반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주기와 통일
- ④ 필요한 법제 구성요소가 누락된 경우 타 법령 참고하여 정비
- ⑤ 인증제도 관련 통합 법률 제정 시 인증제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운영기반 마련

2 관리체계 일원화

- 정부 인증제도 관련 법령 통합 시 식품 품질·규격 인증제도의 관리 일원화를 통해 인증의 전문성 및 신뢰성(권위) 강화 필요
 - 식품 품질·규격 인증은 민간 중심 인증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정부 인증 통합 관리 조직 신설 필요성 검토
- ^{가칭}농수산물품질인증원 설립 등을 검토하여 정부 인증제도 통합 관리(운영실태 파악, 개선방향 제시 등) 역량 강화

- (정부인증) 행정·공공기관 직접 인증 및 행정·공공기관이 지정한 민간 인증기관 인증의 통일적 관리(신청-평가-인증-사후관리 및 교육)
- (민간인증) 민간 인증제도 활성화(해외 동등성 인정 분야 지원, 민간 인증 기관↔수요업체/소비자 분쟁 조정, 시범사업 등 민간인증 지원사업) 역할 수행

V. 기대효과

- (인증제도 활성화) 인증제도운영 체계화를 통해 소비자, 인증업체 신뢰 확보 및 수출 활성화 계기 마련
 - * (소비자.인증업체) 법령을 쉽게 검색.확인, 인증 제도 간 차이점 확인, (인증업체) 인증 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 관련 인증유지 등 필요 사항 대응 용이 등
- (입법적 불균형 해소) 소관부처(농식품부·해수부)는 인증제도 관련 법령의 상호 비교를 통해 입법 요소 누락사항 및 불균형 발굴·보완 가능
 - * ①인증 요건(자격 등) ②인증 신청 및 절차(안전성과 품질 등 확인) ③사후관리(출입 검사 등 감독 절차 등) ④ 인증기관(정부 또는 민간) ⑤행정처분(취소 등) ⑥유효기간 ⑦수수료 ⑧기타 사항
- (관리 효율화) 가칭 '농수산식품품질인증원' 설립을 통해 인증제도 운영·관리의 전문성 강화 및 인증제도 신뢰성 확보
 - 아울러 통합법령 운영을 통해 법령 개정 소요 발생 시 일시에 일괄 대응(국회·평가·심사 등) 등 개정 편의성 확보

VI. 향후계획

- (본회의 처리) 본회의 보고('24.9.25) 후 관련부처 보고안건 송부
- (통합관리방안 검토) 농수산식품 정부 인증제도 통합법안* 마련 등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25년 상반기, 농어업위)
 - * '가칭' 농수산식품 인증제도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 ** 통합가능 법률 선별 → 법률안 마련(법·시행령·시행규칙) → 관계부처 제공 / 인증제도 관리 전담기관 설립 필요성 검토

참고

인증제도 운영기관 사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수산물품질인증원(안)
설립 근거 (법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축산법>	<농수산물 품질 인증에 관한 법률>(안)
설립 일자	1883.8. (분석시험소 설치) 1996.2. (중소기업청 소속 국립기술품질원 신설)	2006.10. (축산물HACCP 기준원 설립) 2011.5. (공공기관 지정)	1993.8. (축산물등급판정소 개소) 2007.4. (공공기관 지정)	2027
설립 형태	행정기관 (소속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식약처	농식품부	농식품부/해수부
조직 구성	4국22과	6본부18팀	5본부18처	-
주요 업무	(국가표준기본법) ○ 국가표준 지정 (산업표준화법) ○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제도 운영 ○ 국제표준협력 * ISO, IEC 등 국제 기술표준 비정부 기구와 협력 (제품안전기본법) ○ 제품안전관리제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평가인증 * NEP(New Excellent Product), NET(Technology), GR(Good Recycle Product) 등 인증 제도·마크 운영 * 시행령에 따라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인증업무 위탁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 HACCP 인증 및 교육 * 식품, 축산물 * 양식장HACCP: 수품원 ○ 음식점위생등급지정 ○ 식품안전국가인증 * 국내식품 세계화를 위해 HACCP에 더해 SCM, FSMS 평가를 포괄, 인증 ○ 자국생산증명인증 * 한국식품임을 인증	(축산법) ○ 축산물 등급판정 * 소, 돼지는 의무 * 닭, 오리, 계란, 말, 꿀은 자율판정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 축산물 이력제 ○ 유통정보조사, 축산 유통정책지원, 축산 디지털전환 등	○ 정부인증관리 * 공공기관에서 직접 인증 * 또는 민간기관 지정하여 인증, 사후관리 ○ 민간인증활성화 * 민간인증기관-피인증업체, 민간인증기관-소비자 간 분쟁조정 * 시범사업 지원 ○ 국제인증협력 * MSC 등 국제 식품인증 비정부 기구와 협력 ○ 인증 관련 해외 동향 파악 등

지역특화 식품산업 지도(map) 제시

2024. 9. 25.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지역특화 식품산업 지도(map) 제시 요약

1. 추진배경

- 식품산업 경제정책 수립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별 인프라 파악 및 시각화 → 지역 특화 식품산업 지도 제시

< 지도 제작 활용 데이터 >

- ◆ (기업)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생산실적(가공품 등에 한정)이 있는 '22년 전국 229개의 시군구,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식품기업(식약처)
- ◆ (품목) 식약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등 25개 품목군 활용
- ◆ (기타) 식품산업단지, 클러스터, 관련대학, 연구소 현황(지자체 등 협조)
- ☞ 지역별 시도, 시군구 → 25개 품목군별 업체(실 업체수 29천개소/중복포함 49천개소) 및 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연구소, 대학 등 소재지 표시

2. 식품산업 현황 - 보고안건의 지도 참고

- (인프라) 식품업체(29,025개소), 종업원(349,857명), 클러스터(46개), 지역특구(74개), 식품관련대학(128개 대학 412개 학과), 기업연구소(3,645개)
 - * 업체, 종업원, 대학, 기업연구소는 서울·경기도 및 충청도(수도권 인근)에 집중 분포, 클러스터 및 지역특구는 지방에 다수 분포
- (규모)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액(60.9조원), 국내 판매(전국 66.9조원), 수출(5,706백만 달러) - 부문별로 시도별/시군구별/품목군별 분석
 - * 경기도가 생산·판매·수출 최대규모 / 국내판매는 빵류, 수출은 유탕면(라면 등) 최대

3. 향후계획

- (추가보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업체, 기업부설 연구소 데이터 추가 및 신규 발생 데이터('22년 12월 이후 DB)를 반영하여 갱신
- (배포·홍보) 연구용역 결과(책자)는 관계 부처, 대학, 연구기관 등 배포 및 농어업위 누리집 게재 → 식품분야 정책 수립 등에 활용
 - * 향후('25~)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고도화 작업 지속



목 차



I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67
II . 식품산업 지도 작성 통계	68
III. 식품산업 현황 분석	77
1. 총괄	77
2. 품목별	79
3. 지역별	85
IV. 향후 계획	94

I.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 농수산물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특화산업 및 클러스터 분포 현황 자료 부재로 정책 수립 시 근거 자료 활용의 어려움
- 지역별 자원 활용 및 융복합기술(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과 연계한 식품 분야 유망 산업의 발굴·육성 방안 모색이 필요
 - 지역별 지도를 활용하여 지역 식품산업 홍보 및 지자체-산업계 협업 강화 방안 모색 필요

□ 연구 목적

- 식품산업 경제정책 수립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품목별 농수산물식품 특화산업 현황 지도(map) 제작
- ☞ 국내 식품기업 관련 업계의 지역분포 현황을 지도로 표시하여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네트워크 활성화, 산학연 협업 및 기업투자 확대 도모

□ 활용 데이터

- (기업)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생산실적(가공품 등에 한정)이 있는 '22년* 전국 229개의 시군구,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식품기업
 - * 최신 데이터 2022년 자료('24.9. 현재 '23년 기업정보는 서비스 미지원)
- (품목) 식약처 조사 자료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등 25개 품목군 전부 활용
- (기타) 식품산업단지, 관련대학, 연구소, 위공판장은 지자체 등 협조

□ 지도제작 방법

- 지역별 시·도, 시·군·구 → 25개 품목군별 업체(실 업체수 29천개소 /중복포함 49천개소) 및 클러스터, 산업단지, 연구소, 대학 등 소재지 표시

Ⅱ. 식품산업 지도 작성 통계

1 통계 자료(식약처 등)

- (근거) 식품위생법 제4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생산실적 등의 보고)에 따라 실시되는 보고조사(보고된 자료에 의한 조사)
 - '98.10월 국가 공식통계로 지정, 매년 말일 기준 1년 단위 조사·통계 작성
- (범위) 식품위생법(제42조 제2항)에 영업자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업체 * 기구·용기·포장지 및 용기류, 식품조사처리업체는 제외
- (조사방법)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직접 생산 실적보고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보고 * 실적 미보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
- (용어) 생산실적 통계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 생산액(제조원가) : 영업기간 내에 생산한 해당 제품의 생산원가
 - 국내판매액 : 영업기간 내 각 업체에서 국내에 판매한 제품의 생산액에 기업이윤을 합한 금액
 - 수출액 : 영업기간 내에 각 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외로 수출한 금액(1달러=1,292.20원)
- (업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식품업체 총 29,025개소
- (품목) 식품 및 식품 첨가물(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총 25개 품목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두부류 또는 묵류	특수의료용도식품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빙과류	식용유지류	장류	알가공품류	즉석식품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면류	조미식품	유가공품	기타식품류
당류	음료류	절임류 또는 조림류	수산가공식품류	첨가물
잼류	특수영양식품	농산가공식품류	동물성가공식품류	주류

□ 업체 및 관련기관 등 현황

- (업체) 통계에 사용된 생산실적 보고 업체 수는 총 29,025개소임
 - * 시도별 : ①경기도 7,236개소 → ②경북 2,480개소 → ③전남 2,472개소 → ④경남 2,352개소 → ⑤충남 2,108개소 순임
- (종업원 수) 식품산업 생산업체 종업원 수는 전국 총 349,857명
 - * 시도별 : ①경기도 104,740명(29.9%) → ②충북 40,219명(11.5%) → ③충남 31,625명(9.0%) → ④경남 24,532명(7.0%) → ⑤전북 21,006(6.0%) 순임
- (식품산업 클러스터) 식품산업 클러스터는 전국 총 46개 분포
 - * 시도별 : ①경북·전북 각 10개소 → ③전남 6개소 → ④충북 5개소 → ⑤제주·충남·강원 각 1개소
- (지역특구) 지역특구는 전국 총 74개 분포
 - * 시도별 : ①전남 17개소 → ②경북 14개소 → ④충남 12개소 → ⑤전북 6개소
- (식품관련 대학) 국내 총 128개 대학에 412개의 식품 관련 학과 설치
 - * 시도별 : ①서울 69개소 → ②경기 60개소 → ③전북 33개소 → ④충남 30개소 → ⑤경북 28개소 순임
- (식품연구소) 식품관련 기업연구소는 총 3,645개 설치
 - * 시도별 : ①경기 1,229개소 → ②서울 473개소 → ③충남 252개소 → ④충남 241개소 → ⑤전북 207개소 순임

□ 식품산업 현황 분석

- (생산)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액은 약 60.9조원 규모임
 - * 시도별 : ①경기도 17.0조(27.9%) → ②충북 7.5조(12.2%) → ③충남 6.1조(10.0%) → ④경남 4.7조(7.7%) → ⑤인천 4.2조(6.9%) 순임

- * 시군구별 : ①인천 중구 2.3조 원(3.7%) → ②경기 평택시 2.2조 원(3.7%) → ③충남 천안시 2.2조 원(3.6%) → ④충북 음성군 2.1조 원(3.5%) 순임
- * 품목군별 : ①음료류 8.6조원(14.1%) → ②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7.1조원(11.6%) → ③수산가공식품류 5.7조원(9.3%) → ④조미식품류 5.3조(8.7%) 순임
- * 세부품목군별 : ①빵류 3.3조원(5.4%) → ②기타 수산물가공품 2.9조원(4.8%) → ③유탕면 2.9조원(4.8%) → ④커피 2.6조(4.3%)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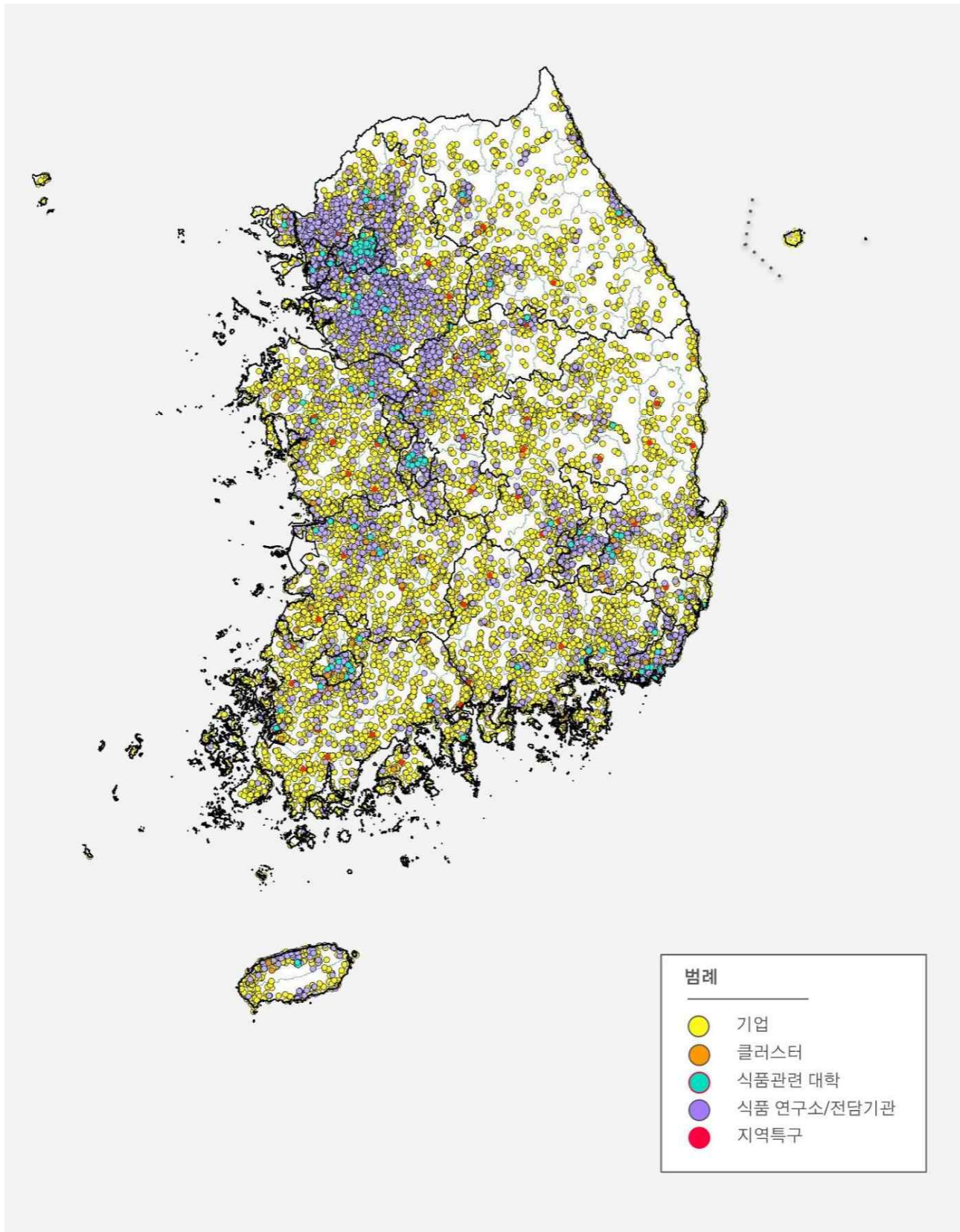
□ (국내판매) 식품 및 식품첨가물 국내 판매는 전국 약 66.9조원 규모임

- * 시도별 : ①경기도 19.9조(29.8%) → ②충북 8.7조(12.9%) → ③충남 6.5조(9.7%) → ④경남 5.2조(7.7%) → ⑤전북 4.3조(6.5%) 순임
- * 시군구별 : ①경기도 이천시 2.6조 원(3.9%) → ②충북 음성군 2.6조 원(3.8%) → ③충북 청주시 2.4조 원(3.6%) → ④경기 평택시 2.4조 원(3.5%) 순임
- * 품목군별 : ①음료류 10.3조(15.4%) → ②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8.0조원(12.0%) → ③수산가공식품류 6.1조(9.0%) → ④즉석 식품류 5.9조(8.7%) 순임
- * 세부품목군별 : ①빵류 4.0조원(5.9%) → ②기타 수산물가공품 3.2조원(4.8%) → ③커피 3.2조원(4.7%) → ④즉석조리식품 2.8조(4.2%) 순임

□ (수출) 식품 및 식품첨가물 수출은 전국 약 5,706백만 달러 규모임

- * 시도별 : ①경기도 885백만 달러(15.5%) → ②강원 720백만 달러(12.6%) → ③경남 651백만 달러(11.4%) → ④충북 552백만 달러(9.7%) → ⑤전남 523백만 달러(9.1%)
- * 시군구별 : ①강원도 원주시 6억 달러(10.5%) → ②인천 중구 4.2억 달러(7.3%) → ③경기 평택시 3.8억 달러(6.6%) → ④충북 청주시 2.8억 달러(4.9%) 순임
- * 품목군별 : ①면류 1,103백만 달러(19.3%) → ②음료류 735백만 달러(12.9%) → ③수산가공식품류 719백만 달러(12.6%) → ④즉석식품류 646백만 달러(11.3%) 순임
- * 세부품목군별 : ①유탕면 1,011백만 달러(17.7%) → ②즉석조리식품 385백만 달러(6.8%) → ③기타 수산물가공품 337백만 달러(5.9%) → ④조미김 294백만 달러(5.2%) 순임

□ 식품 관련 기관 현황



3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 (지역특구) 전국 시·도 지자체 대상 ‘지역특화발전특구’ 조사 수행

- 지역특화발전특구 중 식품과 관련성이 있는 특구를 선별하여 시도별 현황파악을 수행함
- 우리나라 식품관련 지역특구는 전국 총 74개가 소재하고 있음
 - 지역별로 전남에 17개 지역특구가 소재하여 가장 많으며, 이어 경북이 14개, 충남 12개, 전북 6개, 충북은 6개씩 산업단지가 있음

(단위: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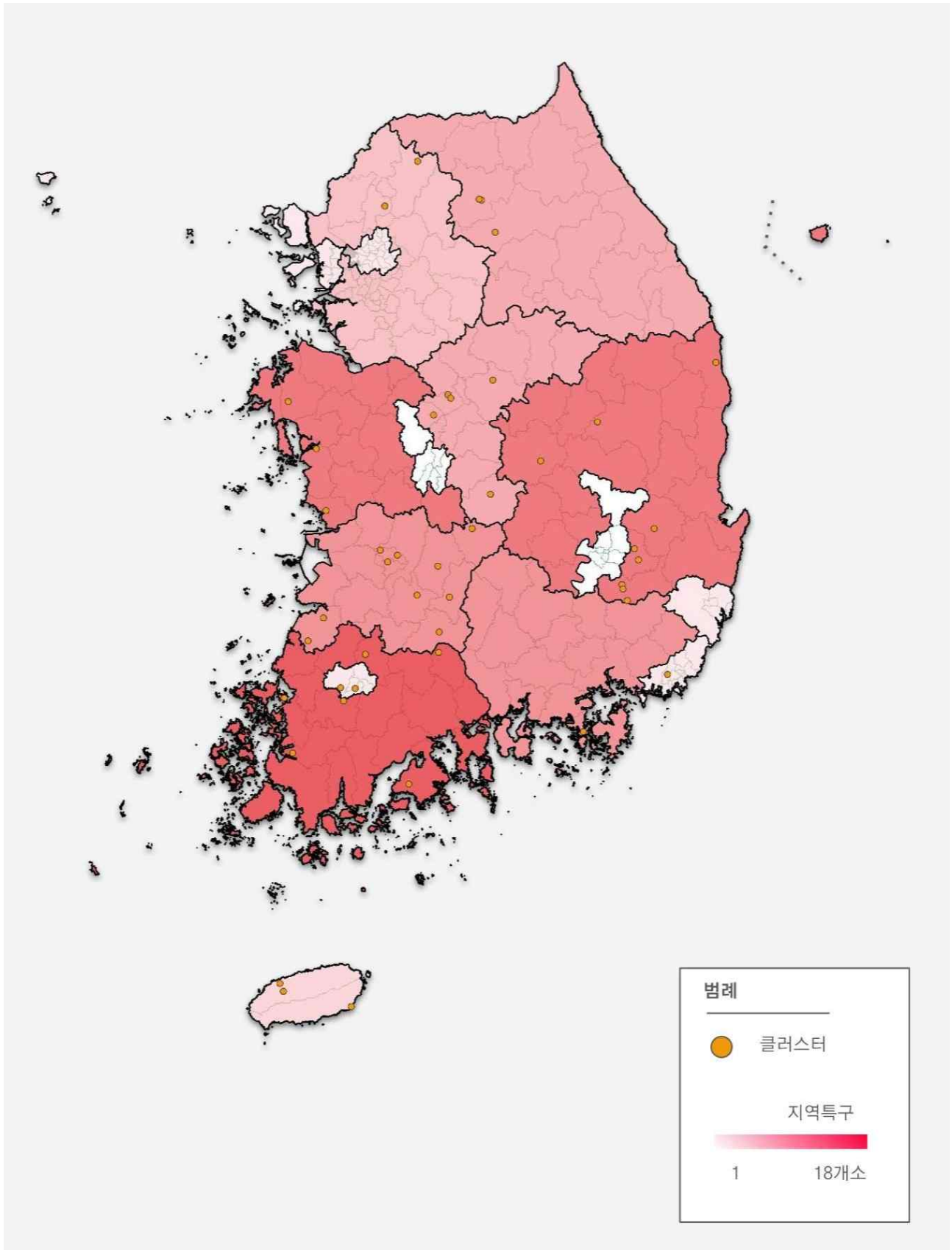
합계	전남	경북	충남	전북	충북	강원	경남
74	17	14	12	6	6	5	5
	경기	광주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제주
	3	1	1	1	1	1	1

□ (클러스터) 전국 시·도 지자체 대상 ‘식품 클러스터 현황 조사’ 수행

- 클러스터(산업단지명, 조성주체, 연도, 면적), 소속기업 현황(기업명, 주소, 품목, 매출 등)
- 식품산업 클러스터는 전국 총 46개로, 한우 관련 클러스터가 다수
 - 지역별로 경북과 전북이 모두 10개로 가장 많으며, 이어 전남(6개), 충북(5개), 제주, 충남, 강원이 3개 순임

(단위: 개수)

합계	경북	전북	전남	충북	제주
46	10	10	6	5	3
주요 품목	감	한우, 치즈	딸기, 고구마	육우, 포도	넙치, 육류
충남	강원	경기	광주	경남	부산
3	3	2	2	1	1
김, 양돈	돼지, 한우	양돈, 한과	김, 밀	멍게	미역, 다시마



4 대학 및 연구기관

□ (대학) 대학알리미* 사이트에서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과 데이터 구축

- 대학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웹사이트(academyinfo.go.kr)
 - 학과명, 전공명에 '식품'을 키워드로 검색
- 국내 총 128개 학교에 412개의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음
 - 서울에 69개 학과가 소재하고, 이어 경기(60개), 전북(33개), 충남(30개) 순이며, 울산(4개)에는 식품관련 학과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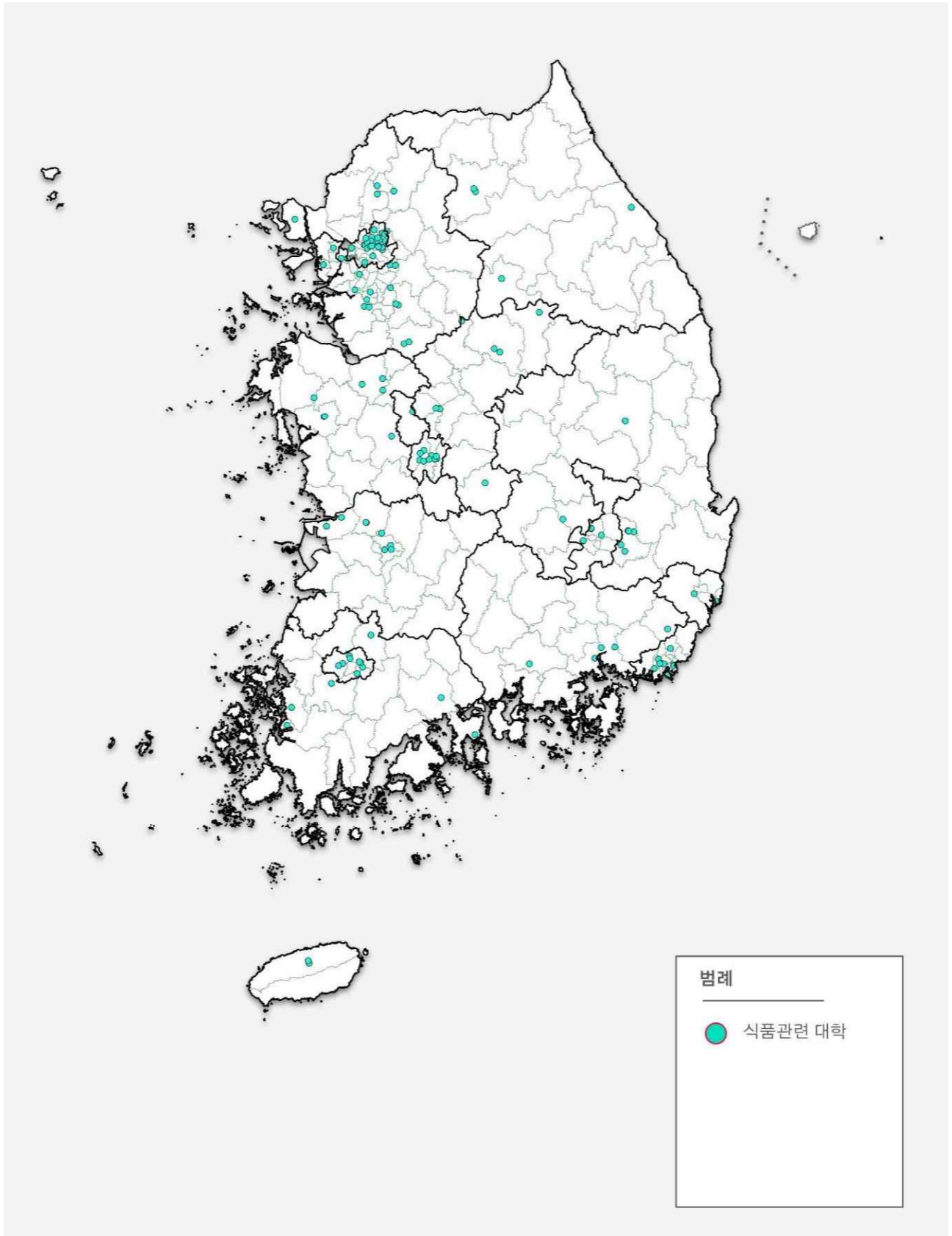
합계	서울	경기	전북	충남	경북	부산	광주	전남
412	69	60	33	30	28	27	23	23
경남	대구	강원	대전	충북	인천	제주	세종	울산
21	21	19	19	18	6	6	5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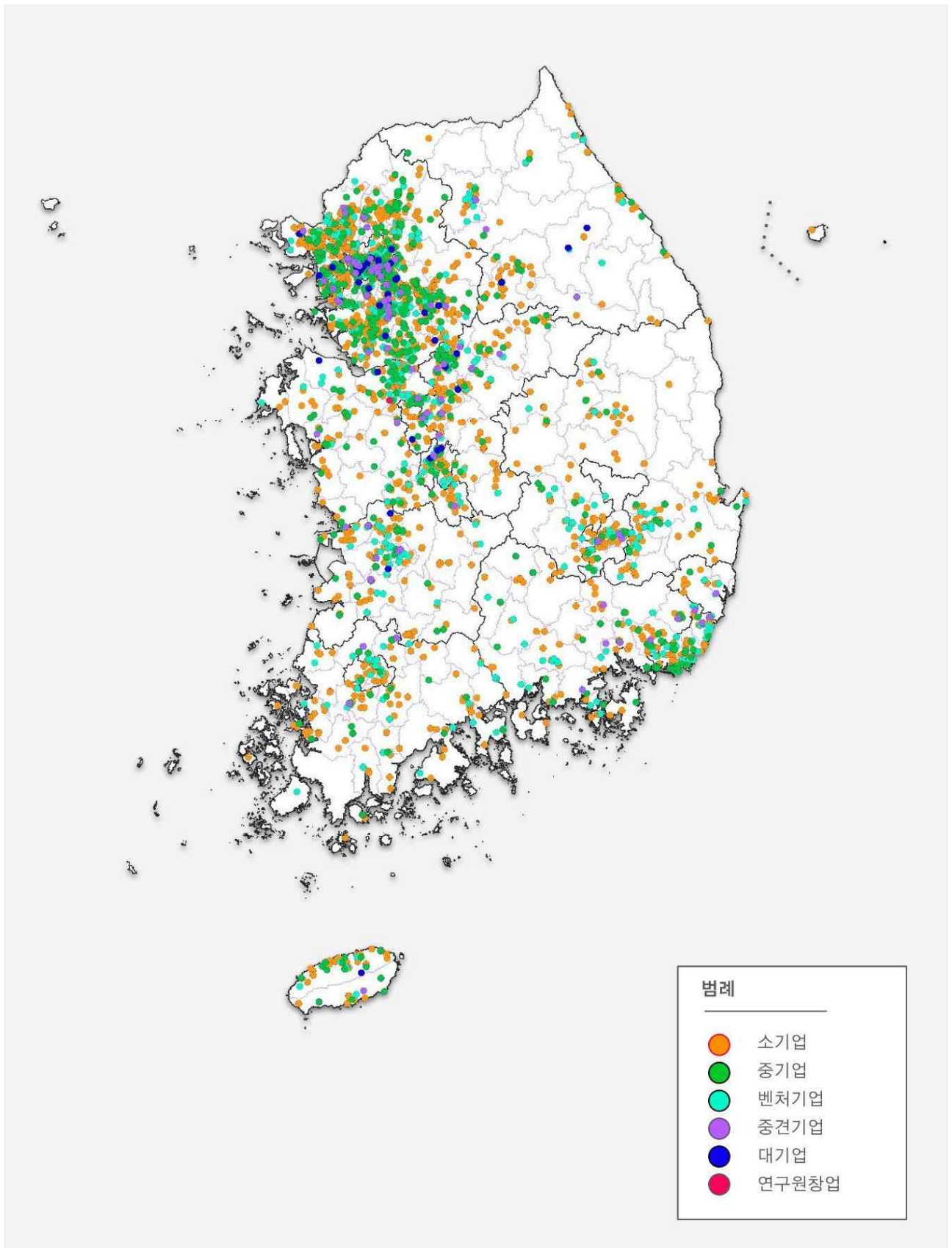
□ (연구기관) 기업부설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에서 '식품' 관련 데이터 구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연구소/전담부서 신고
- 식품관련 연구소/전담부서는 총 3,645개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 분포
 - 지역별로 경기(1,229개), 서울(473개), 인천(175개) 등 수도권에 총 1,877개가 소재하여 전체의 5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개수)

합계	경기	서울	충남	충북	전북	경북	인천	경남
3,645	1,229	473	252	241	207	178	175	162
전남	강원	부산	대구	제주	대전	광주	세종	울산
161	142	122	81	76	71	43	18	14





Ⅲ. 식품산업 현황 분석

1 총괄

□ (업체 분포)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업체 수는 전국 총 29,026개소*

* 2022년 식약처(openapi.foodsafetykorea.go.kr)업체별 주소(인허가 번호) 기준으로 집계하였으며 비식품(기구 및 용기포장, 용기류) 및 식품조사처리업은 제외

○ (시도별) 경기도가 7,236개소(24.9%)로 가장 밀집되어 있으며, 경북 2,480개소(8.5%), 전남 2,472개소(8.5%), 경남 2,352개소(8.1%), 충남 2,108개소(7.3%) 순임

□ (종업원 분포) 식품산업 생산업체 종업원 수는 전국 총 349,857명

○ (시도별) 경기도가 104,740명(29.9%)로 가장 많으며, 이어 충북이 40,219명(11.5%), 충남 31,625명(9.0%), 경남 24,532명(7.0%) 순임

(단위: 개소, 명)

지 역	계	경기	충북	충남	경남	전북	경북	전남	강원
종업원수	349,857	104,740	40,219	31,625	24,532	21,006	20,533	19,387	16,975
비 중	100.0	29.9	11.5	9.0	7.0	6.0	5.9	5.5	4.9
지 역	부산	인천	대구	서울	울산	광주	대전	제주	세종
종업원수	16,165	15,097	8,600	8,330	5,955	5,451	4,350	4,023	2,869
비 중	4.6	4.3	2.5	2.4	1.7	1.6	1.2	1.1	0.8

□ (생산)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액은 전국 약 60.9조원 임

○ (시도별) 경기도가 17.0조(27.9%), 가장 많으며, 충북 7.5조(12.2%), 충남 6.1조(10.0%), 경남 4.7조(7.7%), 인천 4.2조(6.9%) 순임

○ (시군구별) 인천 중구가 2.3조 원(3.7%)로 생산금액이 가장 크며, 이어 경기 평택시 2.2조 원(3.7%), 충남 천안시 2.2조 원(3.6%), 충북 음성군 2.1조 원(3.5%) 순임

□ (국내판매) 식품 및 식품첨가물 국내 판매는 전국 약 66.9조원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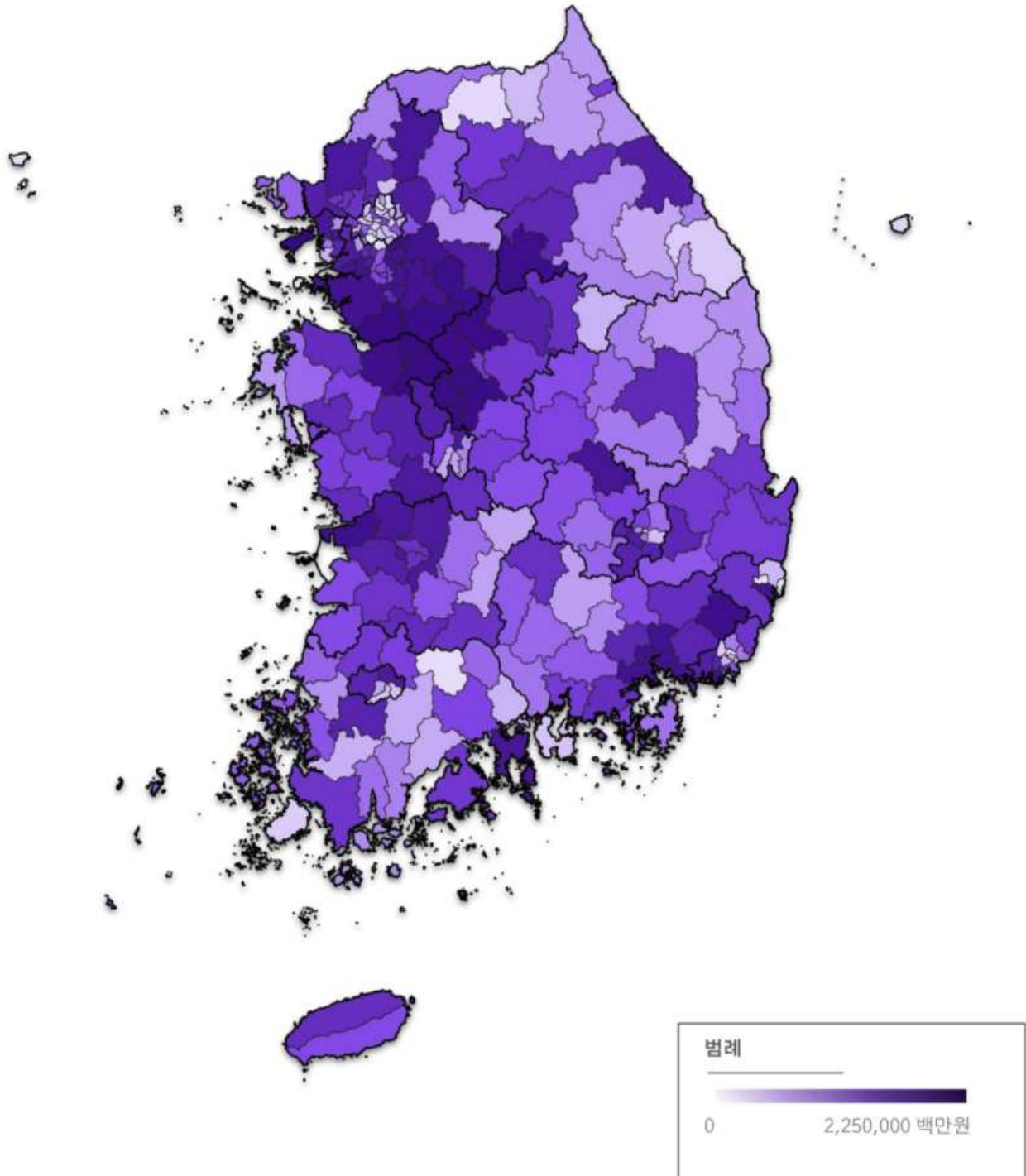
- (시도별) 경기도가 19.9조(29.8%), 가장 많으며, 충북 8.7조(12.9%), 충남 6.6조(9.6%), 경남 5.2조(7.7%), 전북 4.3조(6.5%) 순임
- (시군구별) 경기 이천시가 2.6조 원(3.9%)로 가장 크며, 충북 음성군 2.6조 원(3.8%), 충북 청주시 2.4조 원(3.6%), 경기 평택시 2.4조 원(3.5%) 순임

□ (수출) 식품 및 식품첨가물 수출은 전국 약 5,706백만 달러 임

- (시도별) 경기 885백만 달러(15.5%), 강원 720백만 달러(12.6%), 경남 651백만 달러(11.4%), 충북 552백만 달러(9.7%), 전남 523백만 달러(9.1%) 순임
- (시군구별) 강원도 원주시가 6억 달러(10.5%)로 가장 크며, 인천 중구 4.2억 달러(7.3%), 경기 평택시 3.8억 달러(6.6%), 충북 청주시 2.8억 달러(4.9%) 순으로 나타남

(단위: 십억원[생산, 국내 판매], 백만달러[수출])

지 역	합계	경기	충북	충남	경남	인천	전북	강원	부산
생 산	60,930	17,038	7,469	6,090	4,699	4,211	4,194	3,293	2,961
국내판매	66,898	19,916	8,659	6,461	5,178	4,337	4,347	3,292	2,856
수 출	5,706	885	552	307	651	469	477	720	403
지 역	경북	전남	대구	울산	서울	광주	대전	세종	제주
생 산	2,788	2,533	1,057	1,053	1,015	905	815	473	336
국내판매	2,859	2,624	1,154	892	1,087	1,286	1,068	491	391
수 출	261	523	62	226	11	87	45	16	9



□ (품목군) 식품 및 식품첨가물 총 생산은 60.9조원, 국내 판매 66.9조원, 수출 57억 달러임

- (생산) 음료류의 생산이 8.6조원(14.1%)으로 가장 크며, 이어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가 7.1조원(11.6%), 수산가공식품류가 5.7조원 (9.3%)순임
- (수출) 면류의 수출은 1,103백만 달러(19.3%)로 가장 크며, 음료류 (735백만 달러, 12.9%), 수산가공식품류(719백만 달러, 12.6%), 즉석 식품류(646백만 달러, 11.3%)가 주요 수출품목군임

순 위	품목군	생산 (십억원)	비중 (%)	국내판매 (십억원)	비중 (%)	국외판매 (백만달러)	비중 (%)
	총합계	60,930	100.0	66,898	100.0	5,706	100.0
1	음료류	8,565	14.1	10,312	15.4	735	12.9
2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7,050	11.6	7,997	12.0	247	4.3
3	수산가공식품류	5,663	9.3	6,053	9.0	719	12.6
4	조미식품	5,295	8.7	5,471	8.2	229	4.0
5	즉석식품류	5,231	8.6	5,853	8.7	646	11.3
6	농산가공식품류	4,504	7.4	4,581	6.8	102	1.8
7	면류	3,991	6.6	3,417	5.1	1,103	19.3
8	주류	3,897	6.4	5,616	8.4	298	5.2
9	식용유지류	3,394	5.6	3,431	5.1	135	2.4
10	절임류 또는 조림류	2,621	4.3	2,875	4.3	153	2.7
11	첨가물	2,496	4.1	2,267	3.4	638	11.2
12	당류	2,292	3.8	2,172	3.2	360	6.3
13	기타식품류	1,976	3.2	2,125	3.2	147	2.6
14	장류	1,049	1.7	1,233	1.8	95	1.7
15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843	1.4	920	1.4	56	1.0
16	두부류 또는 묵류	795	1.3	981	1.5	4	0.1
17	빙과류	409	0.7	468	0.7	3	0.0
18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232	0.4	286	0.4	0	0.0
19	특수영양식품	204	0.3	270	0.4	12	0.2
20	특수의료용도식품	154	0.3	237	0.4	10	0.2
21	잼류	144	0.2	165	0.2	1	0.0
22	동물성 가공식품류	101	0.2	142	0.2	11	0.2
23	유가공품류	11	0.0	13	0.0	0	0.0
24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7	0.0	9	0.0	0	0.0
25	알가공품류	6	0.0	6	0.0	0	0.0

□ (세부품목) 식품 및 식품 첨가물 세부품목*중 최대 생산, 최대 국내 판매 품목은 빵류이며,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유탕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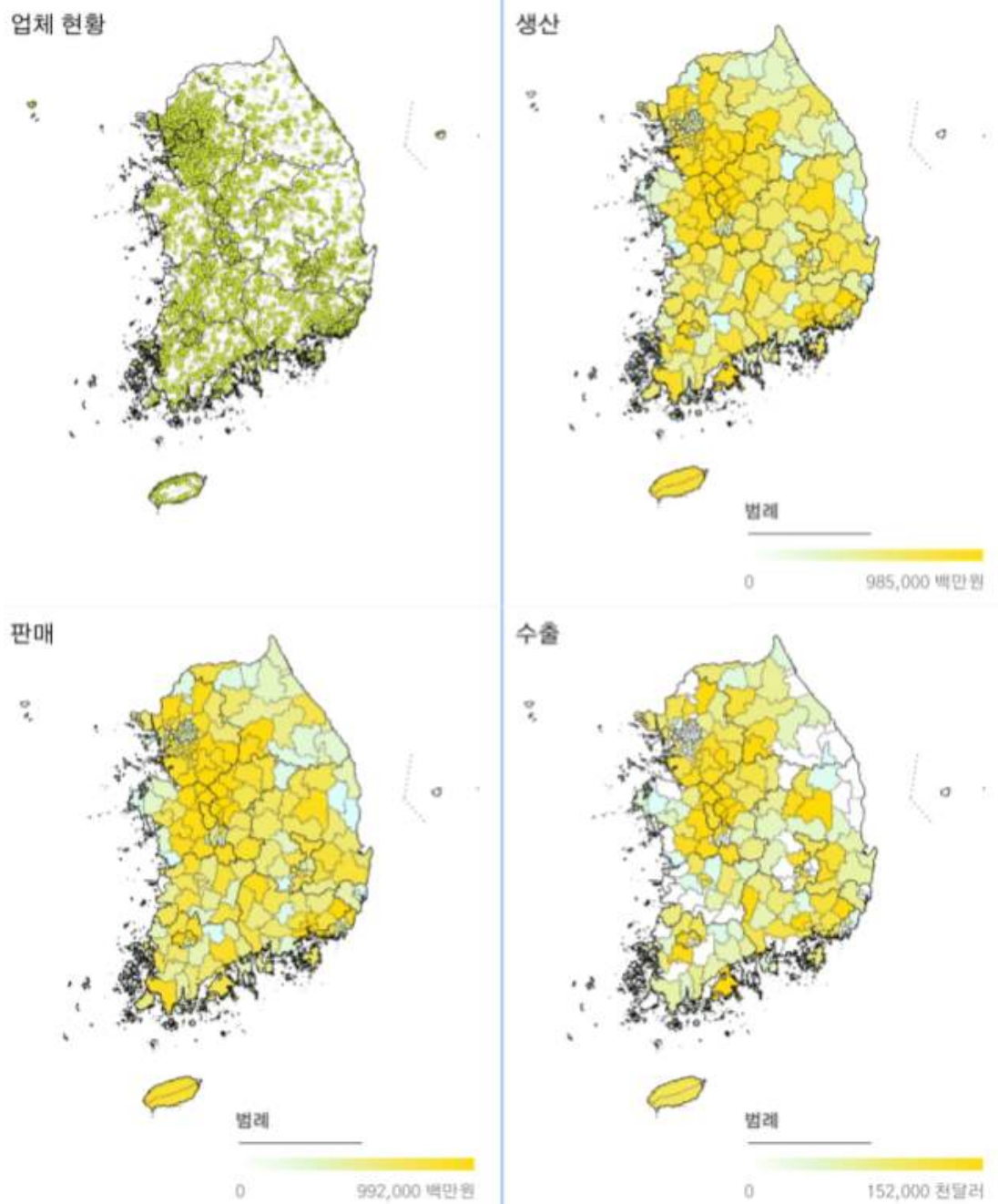
* 세부품목 총 개수 : 513개

- 기타 수산물가공품의 생산과 국내판매는 전체 세부품목 중 2위이며, 수출금액 기준 3위로 나타남
- 빵류의 수출은 상위 20위권 밖으로 주로 내수용으로 판매되는 반면, 유탕면, 조미김, 혼합음료 등은 내수보다 수출 중심 품목임

순위	생산	국내판매	수출
1	빵류	빵류	유탕면
2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즉석조리식품
3	유탕면	커피	기타 수산물가공품
4	커피	즉석조리식품	조미김
5	과자	과자	혼합음료
6	소스	소스	수산화나트륨액
7	즉석조리식품	탄산음료	즉석섭취식품
8	기타가공품	유탕면	설탕
9	탄산음료	맥주	커피
10	즉석섭취식품	기타가공품	기타가공품
11	밀가루	소주	김치
12	소주	즉석섭취식품	과자
13	김치	김치	소스
14	복합조미식품	밀가루	식물성크림
15	맥주	콩기름(대두유)	액상차
16	콩기름(대두유)	혼합음료	소주
17	설탕	복합조미식품	맥주
18	혼합음료	절임식품	혼합제제
19	곡류가공품	설탕	리큐르
20	조미김	곡류가공품	숙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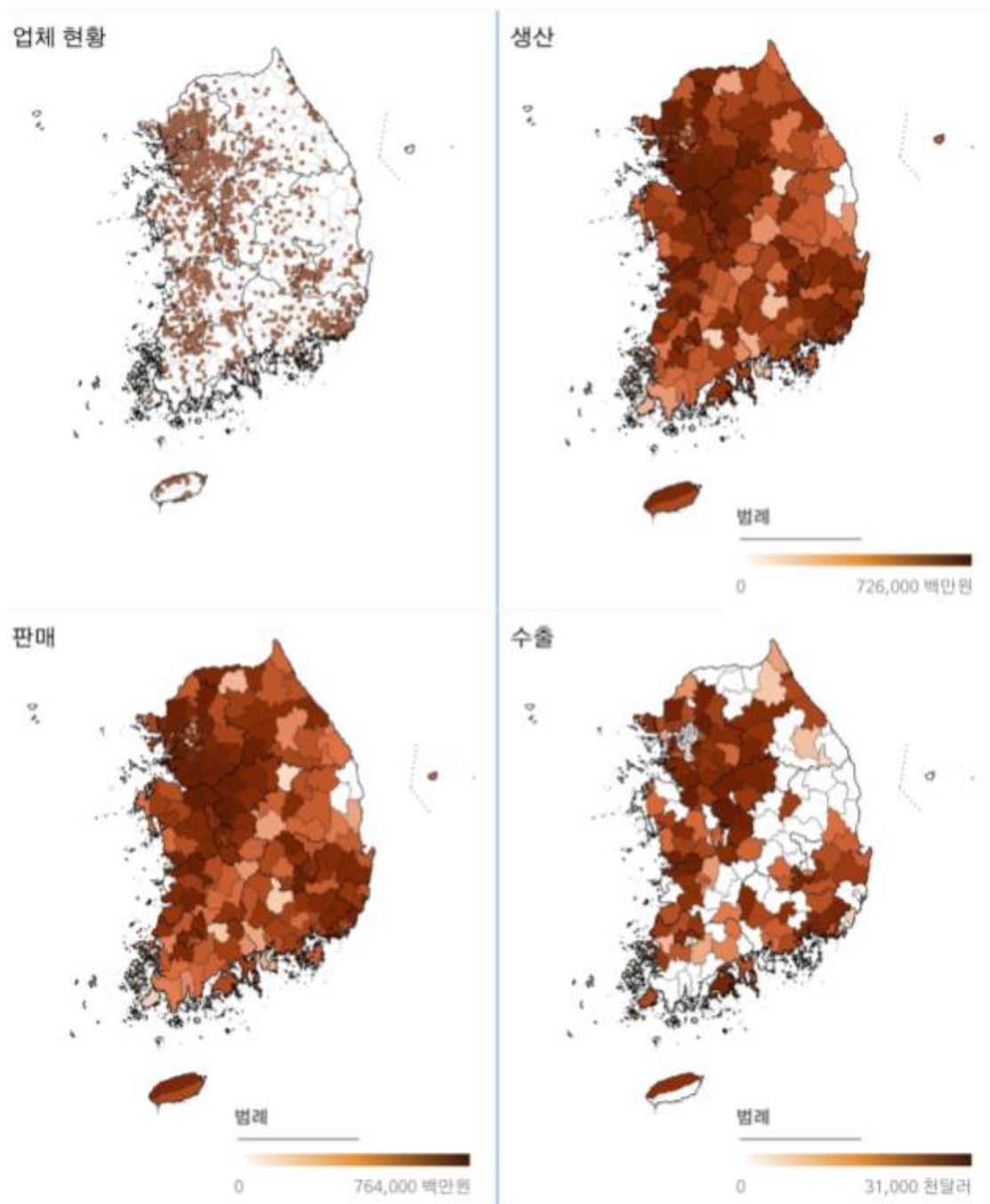
□ 음료류의 지역별 생산/판매/수출 금액

- 음료류는 식품 생산 중 가장 큰 비중(14.1%)을 차지하는 품목군으로 총 8.6조원 생산, 10.3조원의 국내판매, 그리고 7.4억 달러 수출 품목군임
- 지역별로 경기지역의 생산이 가장 크며(2.6조원), 시군구별로는 경기 안성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9,849억원)
- 커피, 탄산음료, 혼합음료, 액상차, 가공두유 등이 주요 세부 품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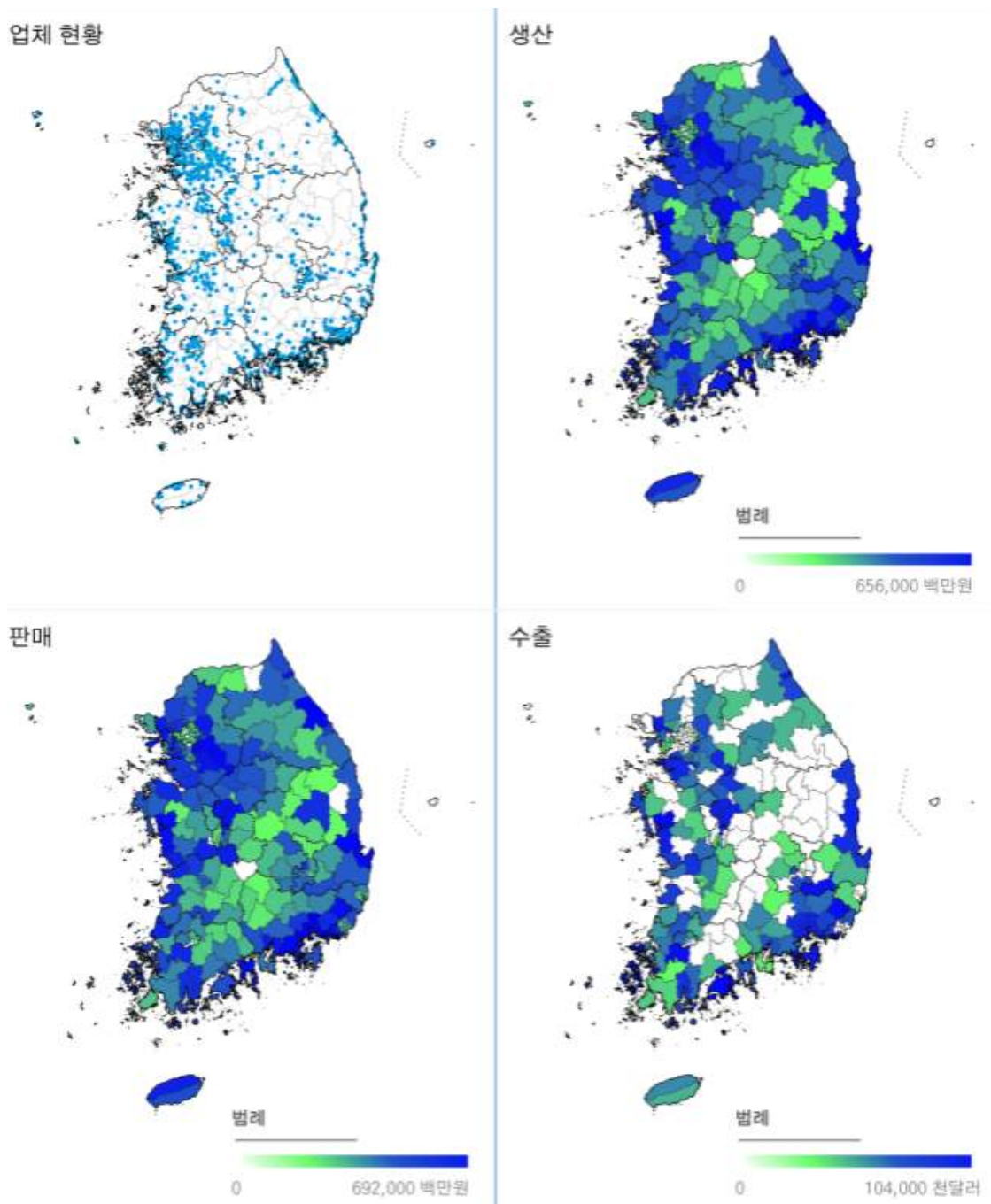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의 지역별 생산/판매/수출 금액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는 생산 비중 11.6% 품목군으로 총 7.1조원 생산, 8.0조원의 국내판매, 그리고 2.5억 달러 수출 품목군임
- 지역별로 경기지역의 생산이 가장 크며(2.8조원), 시군구별로는 경기 성남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7,252억원)
- 과자, 떡류 등이 주요 세부 품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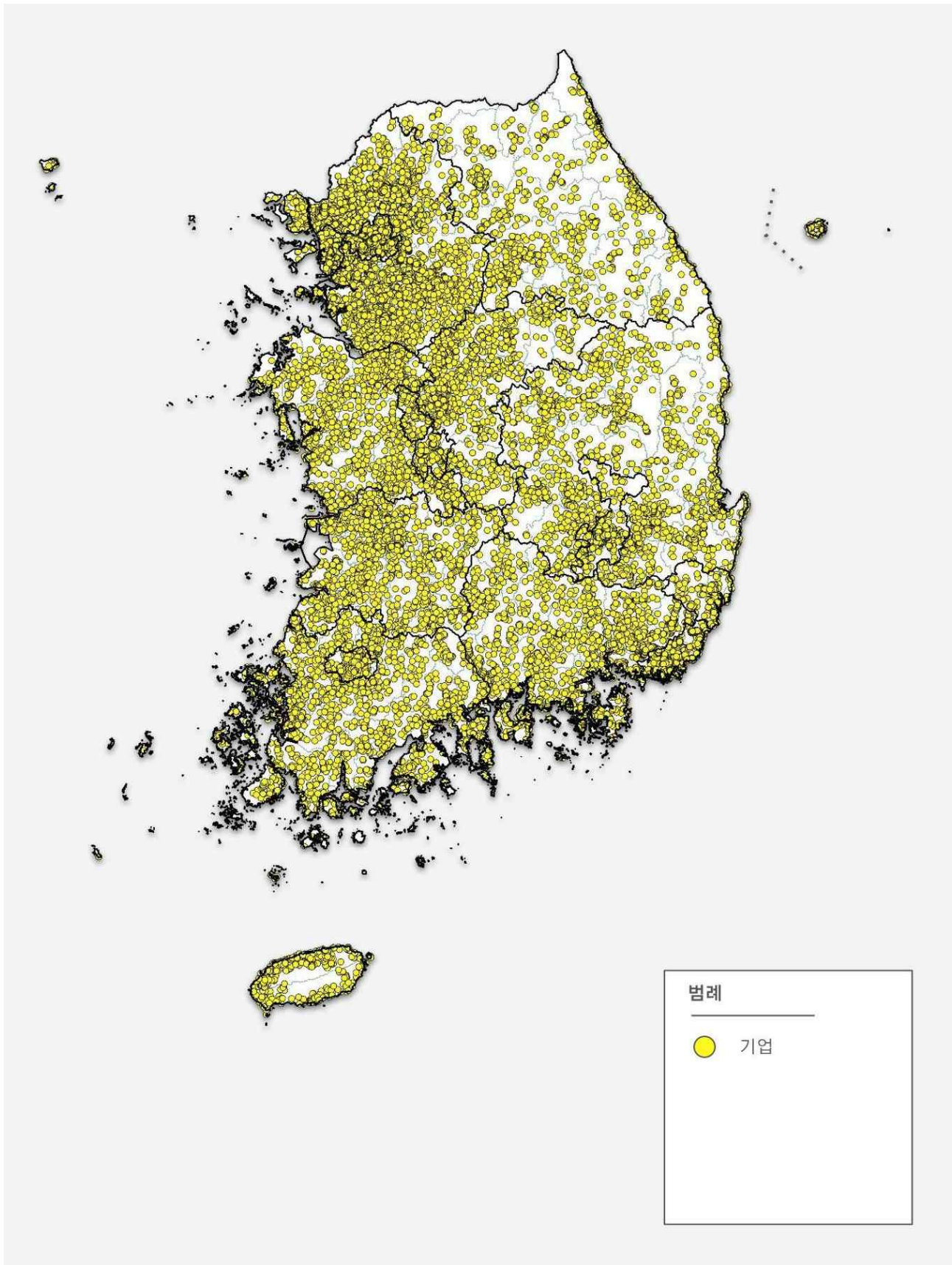


□ 수산가공식품류의 지역별 생산/판매/수출 금액

- 수산가공식품류는 생산 비중 9.3% 품목군으로 총 5.7조원 생산, 6.1조원의 국내판매, 그리고 7.2억 달러 수출 품목군임
- 지역별로 부산지역의 생산이 가장 크며(1.2조원), 시군구별로는 부산시 사하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6,550억원)
- 조미김, 어묵, 조미건어포, 양념젓갈 등이 주요 세부 품목임



3 지역별(시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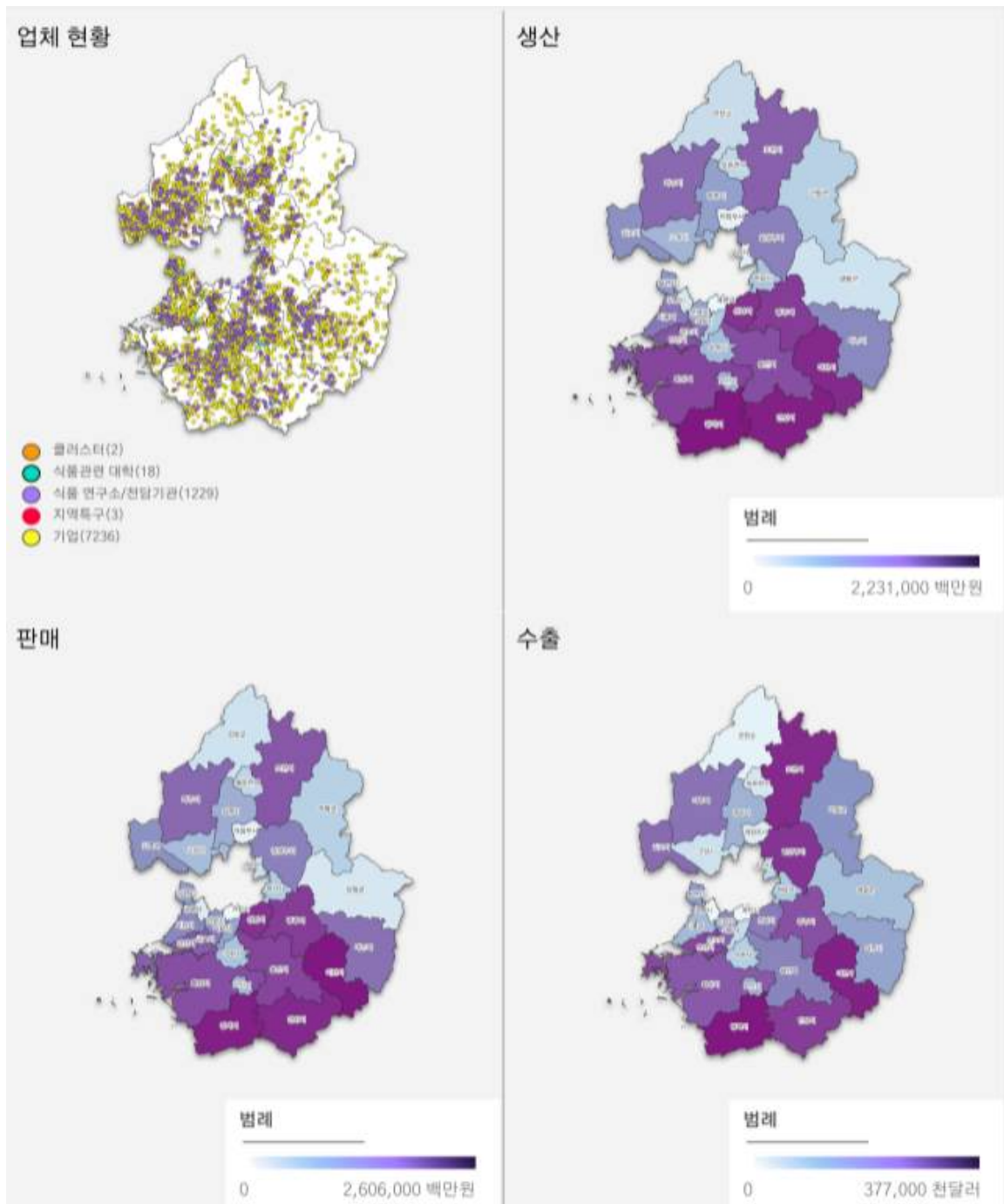
□ (시도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총 생산은 60.9조원, 국내 판매 66.9조원, 수출 57억 달러임

- (생산/판매) 총 생산 중 경기의 생산이 17조원(28.0%) 으로 가장 크며, 이어 충북 7.5조원(12.3%), 충남 6.1조원(10.0%) 순
- (수출) 생산과 마찬가지로 수출 역시 경기(8.6억 달러, 15.5%)가 가장 큰 지역이나, 강원 7.2억 달러(12.6%), 경남 6.5억 달러(11.4%)이 충북(9.7%), 충남(5.4%)보다 수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시도	업체 수	생산 (십억원)	비중 (%)	국내판매 (십억원)	비중 (%)	국외판매 (백만달러)	비중 (%)
합계	29,026	60,930	100.0	66,898	100.0	5,706	100.0
경기	7,236	17,038	28.0	19,916	29.8	885	15.5
충북	1,815	7,469	12.3	8,659	12.9	552	9.7
충남	2,108	6,090	10.0	6,461	9.7	307	5.4
경남	2,352	4,699	7.7	5,178	7.7	651	11.4
인천	1,115	4,211	6.9	4,337	6.5	469	8.2
전북	2,063	4,194	6.9	4,347	6.5	477	8.4
강원	1,687	3,293	5.4	3,292	4.9	720	12.6
부산	1,365	2,961	4.9	2,856	4.3	403	7.1
경북	2,480	2,788	4.6	2,859	4.3	261	4.6
전남	2,472	2,533	4.2	2,624	3.9	523	9.2
대구	1,000	1,057	1.7	1,154	1.7	62	1.1
울산	274	1,053	1.7	892	1.3	226	4.0
서울	1,459	1,015	1.7	1,087	1.6	11	0.2
광주	439	905	1.5	1,286	1.9	87	1.5
대전	447	815	1.3	1,068	1.6	45	0.8
세종	141	473	0.8	491	0.7	16	0.3
제주	573	336	0.6	391	0.6	9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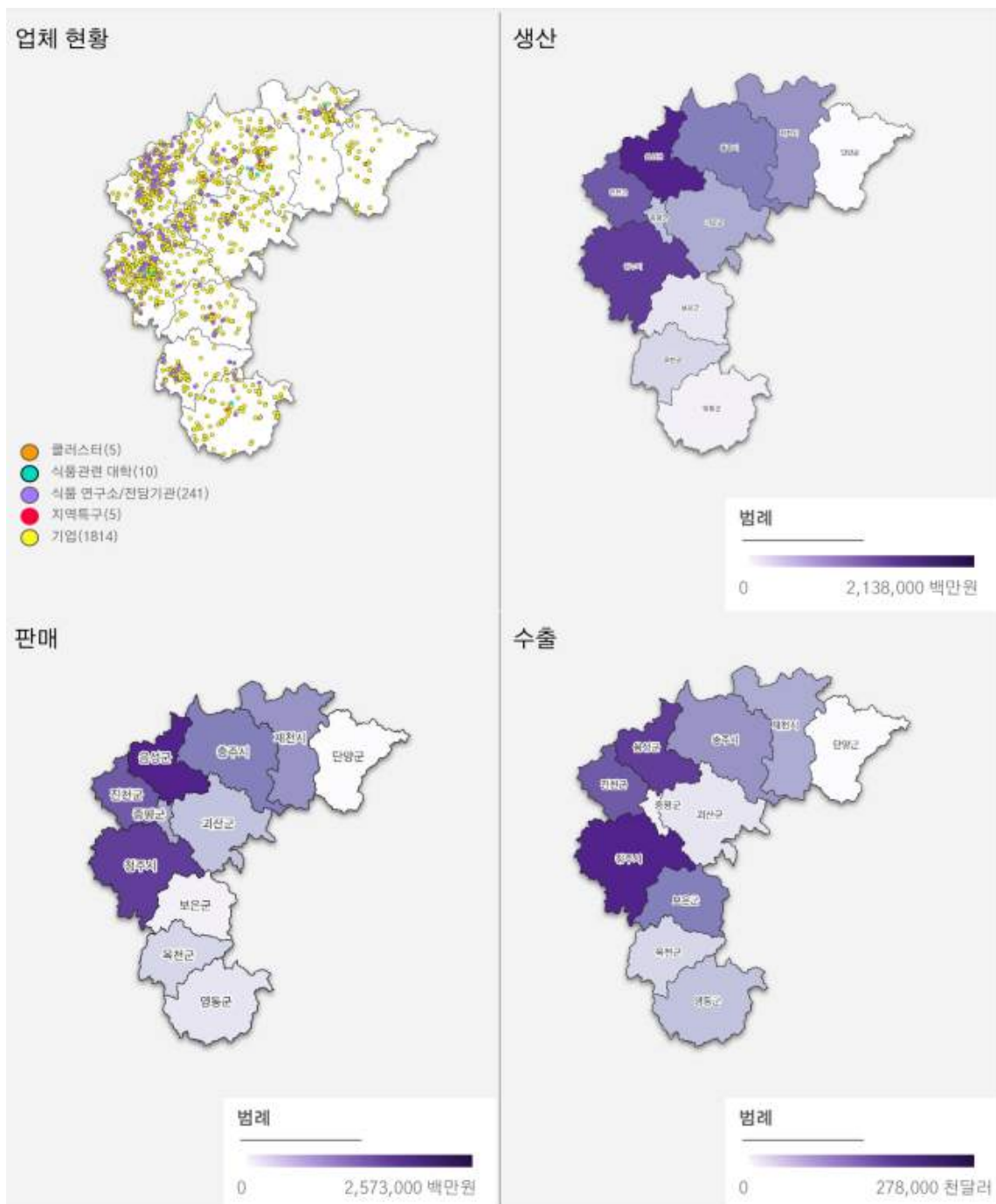
□ 경기의 생산/판매/수출 금액

- 경기의 식품 총 생산은 17.0조 원(28.0%), 국내판매 19.9조 원(29.8%), 수출 8.6억 달러(15.5%)로 국내지역 중 최대 식품 생산지역임
- 지역별로 평택시의 생산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13.09%), 이어 안성시(11.47%), 이천시(11.45%), 성남시(7.15%)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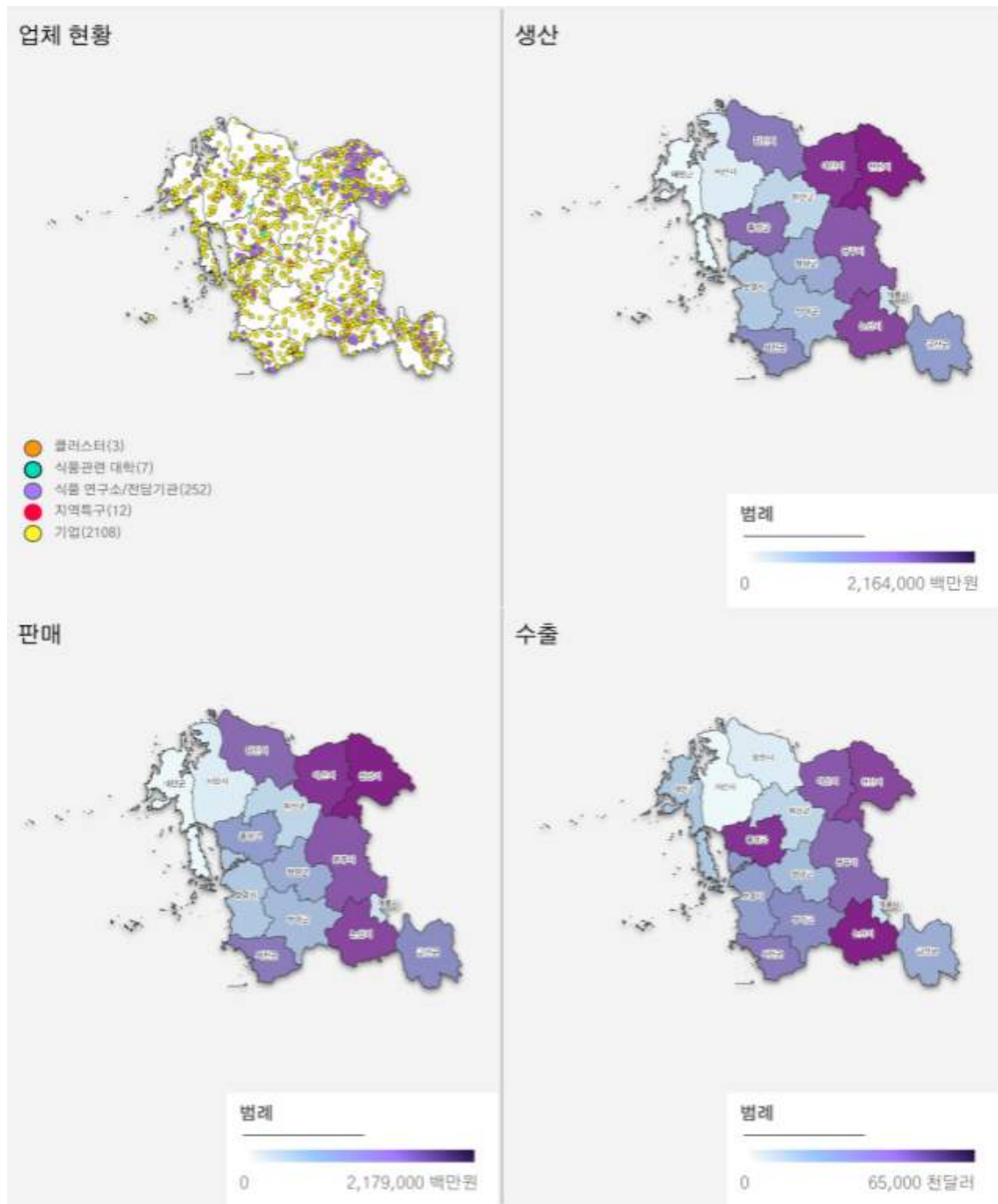
□ 충북의 생산/판매/수출 금액 (충북)

- 충북의 식품 총 생산은 7.5조 원(12.3%), 국내판매 8.7조 원(12.9%), 수출 5.5억 달러(9.7%)로 국내 두 번째 식품 생산지역임
- 지역별로 음성군의 생산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28.61%), 이어 청주시(28.53%), 진천군(25.81%), 충주시(5.23%) 순임



□ 충남의 지역의 생산/판매/수출 금액 (충남)

- 충남의 식품 총 생산은 6.1조 원(10.0%), 국내판매 6.5조 원(9.7%), 수출 3.1억 달러(5.4%)로 나타남
- 지역별로 천안시의 생산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35.53%), 이어 아산시(20.61%), 논산시(9.79%), 공주시(5.92%) 순임



□ 전국 지역별(시군구별) 생산, 국내판매, 수출 순위

- (생산) 전국 시군구 중 인천 중구의 생산이 3.68%로 가장 크며, 이어 경기 평택시 3.66%, 충남 천안시 3.55%, 충북 음성군 3.51% 순
- (수출) 강원 원주시의 전국 수출중 비중은 10.51%로 가장 높으며, 이어 인천 중구 7.34%, 경기 평택시 6.60%, 충북 청주시 4.87% 순

순 위	생산	금액 (십억원)	비중 (%)	국내판매	금액 (십억원)	비중 (%)	수출	금액 (십억원)	비중 (%)
1	인천 중구	2,244	3.68	경기 이천시	2,606	3.89	강원 원주시	600	10.51
2	경기 평택시	2,230	3.66	충북 음성군	2,572	3.85	인천 중구	419	7.34
3	충남 천안시	2,164	3.55	충북 청주시	2,389	3.57	경기 평택시	377	6.60
4	충북 음성군	2,137	3.51	경기 평택시	2,350	3.51	충북 청주시	278	4.87
5	충북 청주시	2,131	3.50	충북 진천군	2,259	3.38	전남 여수시	239	4.18
6	경기 안성시	1,954	3.21	충남 천안시	2,179	3.26	경남 양산시	225	3.94
7	경기 이천시	1,951	3.20	인천 중구	2,123	3.17	울산 남구	213	3.74
8	충북 진천군	1,928	3.16	경기 안성시	1,948	2.91	전북 익산시	201	3.52
9	강원 원주시	1,647	2.70	경남 양산시	1,658	2.48	전북 군산시	171	3.00
10	경남 양산시	1,634	2.68	경남 창원시	1,402	2.10	경기 이천시	162	2.85
11	충남 아산시	1,255	2.06	경기 성남시	1,396	2.09	충북 음성군	155	2.72
12	전북 군산시	1,243	2.04	충남 아산시	1,240	1.85	부산 사상구	135	2.36
13	경기 성남시	1,219	2.00	경기 광주시	1,184	1.77	경남 창원시	103	1.81
14	부산 사하구	1,196	1.96	부산 사하구	1,180	1.76	부산 서구	103	1.81
15	경기 광주시	1,016	1.67	경기 용인시	1,157	1.73	부산 사하구	101	1.76
16	경기 화성시	994	1.63	경기 화성시	1,131	1.69	전남 고흥군	89	1.56
17	경남 창원시	973	1.60	전북 군산시	1,111	1.66	경남 함안군	83	1.46
18	경기 용인시	934	1.53	강원 원주시	1,097	1.64	경북 안동시	68	1.19
19	울산 남구	831	1.36	전남 여수시	865	1.29	광주 북구	67	1.18
20	경기 안산시	805	1.32	경기 포천시	856	1.28	경남 밀양시	67	1.17

○ 인천 중구는 생산금액이 가장 높은 지자체로서 총 2.2조원의 식품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품목별로는 설탕이 7,298억원(32.5%)으로 생산이 가장 높으며, 밀가루 4,068억원(18.1%), 콩기름 2,848억원(12.7%), 만두 1,422억원(6.3%) 등이 주요 생산 품목임
-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업체 총 68개 중 수산가공식품류가 21개소로 가장 많으며, 이어 절임류 또는 조림류가 12개 순임

순위	세부품목	생산금액(천원)	비중(%)
	총합계	2,243,623,850	100.0
1	설탕	729,813,054	32.5
2	밀가루	406,823,010	18.1
3	콩기름(대두유)	284,758,041	12.7
4	만두	142,182,426	6.3
5	혼합식용유	113,740,553	5.1
6	기타수산물가공품	98,270,466	4.4
7	즉석섭취식품	91,862,768	4.1
8	채종유(유채유또는카놀라유)	76,286,826	3.4
9	참기름	36,903,665	1.6
10	기타설탕	36,676,170	1.6
11	곡류가공품	33,091,648	1.5
12	쇼트닝	31,533,564	1.4
13	마가린	23,439,632	1.0
14	올리고당	21,389,182	1.0
15	올리브유	14,932,845	0.7
16	당류가공품	13,945,291	0.6
17	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11,567,597	0.5
18	빵류	7,537,680	0.3
19	기타식물성유지	7,379,153	0.3
20	해바라기유	6,642,432	0.3

○ 경기 이천시는 국내 식품 판매금액이 가장 높은 지자체로서 총 2.6조원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품목별로는 맥주가 7,619억원(29.2%)으로 가장 판매비중이 높으며, 소주 4,925억원(18.9%), 유탕면 1227억원(4.7%), 혼합간장 925억원(3.6%), 즉석섭취식품 877억원(3.4%) 순임
- 경기 이천시 소재 총 157개 업체 중 농산가공식품류가 27개소로 가장 많으며, 이어 조미식품이 20개, 수산가공식품류가 18개 순임

순위	세부품목	국내판매금액(천원)	비중(%)
	합계	2,605,674,723	100.0
1	맥주	761,943,629	29.2
2	소주	492,500,471	18.9
3	유탕면	122,669,396	4.7
4	혼합간장	92,510,530	3.6
5	즉석섭취식품	87,733,661	3.4
6	조미김	77,131,879	3.0
7	양조간장	70,646,824	2.7
8	전분	65,197,370	2.5
9	빵류	61,428,092	2.4
10	기타수산물가공품	59,638,354	2.3
11	기타가공품	59,536,548	2.3
12	신선편의식품	58,830,252	2.3
13	기타과당	52,237,085	2.0
14	커피	50,967,620	2.0
15	곡류가공품	44,316,533	1.7
16	기타주류	42,743,302	1.6
17	소스	37,530,379	1.4
18	당류가공품	35,675,917	1.4
19	간편조리세트	29,455,732	1.1
20	물엿	26,096,087	1.0

- 강원도 원주시는 지자체 중 수출금액이 가장 큰 지자체로서 약 6억 달러의 식품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품목별로는 유탕면이 전체의 89.4%(5.4억 달러)를 차지하여 대부분 수출이 동 품목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음.
- 이외에도 혼합음료 4.3%, 인삼, 홍삼음료 2.7%도 수출하고 있으며, 기타 식품 수출 비중은 1% 내외로 크지 않음
- 강원도 원주시 소재 업체 총 121개 중 기타식품류가 23개로 가장 많으며, 이어 음료류 18개, 농산가공식품류 17개,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가 11개로 나타남

순위	세부품목	국외판매금액(\$)	비중(%)
	합계	599,603,698	100.0
1	유탕면	536,316,427	89.4
2	혼합음료	25,740,539	4.3
3	인삼.홍삼음료	15,963,841	2.7
4	소스	10,161,169	1.7
5	즉석조리식품	3,980,040	0.7
6	기타가공품	2,441,851	0.4
7	과자	1,820,889	0.3
8	추출가공식품	1,172,497	0.2
9	빵류	1,029,056	0.2
10	건면	398,900	0.1
11	어묵	339,585	0.1
12	복합조미식품	120,106	0.0
13	서류가공품	40,489	0.0
14	액상차	17,519	0.0
15	절임식품	17,130	0.0
16	들기름	14,023	0.0
17	참기름	9,622	0.0
18	떡류	7,500	0.0
19	침출차	4,065	0.0
20	커피	2,951	0.0

IV. 향후계획

- (데이터 검증)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업체, 연구소 등 데이터 검증·보완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에 따른 신규 식품 생산 업체 정보의 확보 및 검토 필요
 - * 2022년 12월 이후 신규 발생 및 생산 중단 업체를 반영한 최신 데이터 갱신
- (배포) 최종 결과물 '지역특화 식품산업지도'의 배포 및 활용 독려
 - 컬러로 제작된 최종 결과물 책자(약 200부)*는 관계 부처(농식품부, 해수부 등), 대학, 연구기관에 배포·활용
 - * 상세 부수는 예산 상황 및 수요처에 맞추어 조정 및 배포
- (홍보) 최종 보고서는 농어업위 홈페이지에 게재 및 언론 보도
 - 최종보고서 PDF 형태로 작성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하고,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식품지도 활용 촉진
- (후속연구) 2025년 지역특화 식품산업 지도 제작 연구(고도화 추진)
 - 매년 업데이트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자료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식품 지도 현황 분석 및 제공(전문기관 의뢰)

참고 1

식품 수출 통계 차이

- 「2022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식품 총 수출은 119.6억 달러이며, 가공식품 수출은 84.1억 달러
 - 비식품을 제외한 식품 수출은 농림축산식품 55.6억 달러, 수산식품 11.6억 달러로 총 67.2억 달러로 나타남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총 계	농림축산식품			수산식품
		계	식품	비식품	
신 선	3,567	1,577	1,288	288	1,990
가 공	8,406	7,247	5,557	1,690	1,159
합 계	11,973	8,824	6,845	1,978	3,14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본 연구에서 조사한 식품 등 수출실적은 총 57.1억 달러(수산가공식품 7.2억 달러)로 이는 ①품목 범위, ②식품수출 기업의 차이에 기인함
 - (품목) 농식품부 수출 통계는 관세법에 따른 ‘HS 품목분류체계’에 따라 작성되며, 식약처(본 연구) 수출 통계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라 신선/가공 상태를 분류함
 - * 예: 마른김은 농식품부 수출통계에 수산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 포함되나, 식약처 수출 통계에는 집계되지 않음
 - (기업) 농식품부 수출 통계는 국내에서 수출된 모든 식품을 포함하나, 식약처 수출 통계는 생산실적을 보고한 기업 데이터에 근거함
 -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업체(미보고 업체), 또는 생산은 하지 않고 수출입만 영위하는 업체(중계무역 등)의 수출 실적은 식약처 수출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게 됨

참고 2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 생산 및 판매 현황(2022)

구분	생산현황		판매현황			
	금액 (십억원)	비중 (%)	국내판매 (십억원)	비중 (%)	수출 (백만달러)	비중 (%)
총합계	60,930	100.0	66,898	100.0	5,706	100.0
음료류	8,565	14.1	10,312	15.4	735	12.9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7,050	11.6	7,997	12.0	247	4.3
수산물가공식품류	5,663	9.3	6,053	9.0	719	12.6
조미식품	5,295	8.7	5,471	8.2	229	4.0
즉석식품류	5,231	8.6	5,853	8.7	646	11.3
농산물가공식품류	4,504	7.4	4,581	6.8	102	1.8
면류	3,991	6.6	3,417	5.1	1,103	19.3
주류	3,897	6.4	5,616	8.4	298	5.2
식용유지류	3,394	5.6	3,431	5.1	135	2.4
절임류또는조림류	2,621	4.3	2,875	4.3	153	2.7
첨가물	2,496	4.1	2,267	3.4	638	11.2
당류	2,292	3.8	2,172	3.2	360	6.3
기타식품류	1,976	3.2	2,125	3.2	147	2.6
장류	1,049	1.7	1,233	1.8	95	1.7
코코아가공품류또는초콜릿류	843	1.4	920	1.4	56	1.0
두부류또는묵류	795	1.3	981	1.5	4	0.1
빙과류	409	0.7	468	0.7	3	0.0
식육가공품및포장육	232	0.4	286	0.4	0	0.0
특수영양식품	204	0.3	270	0.4	12	0.2
특수의료용도식품	154	0.3	237	0.4	10	0.2
잼류	144	0.2	165	0.2	1	0.0
동물성가공식품류	101	0.2	142	0.2	11	0.2
유가공품류	11	0.0	13	0.0	0	0.0
벌꿀및화분가공품류	7	0.0	9	0.0	0	0.0
알가공품류	6	0.0	6	0.0	0	0.0

참 고 3

시군구별 생산 및 판매 현황(229개)

지자체별		생산		판매		수출	
시도	시군구	수량(천톤)	금액(십억원)	수량(천톤)	금액(십억원)	수량(천톤)	금액(십억원)
총합계		38,033	60,930	29,714	66,898	2,685	5,706
인천	중구	1,972	2,244	1,363	2,123	282	419
경기	평택시	859	2,230	693	2,350	22	377
충남	천안시	1,338	2,164	1,118	2,179	17	44
충북	음성군	756	2,137	721	2,572	28	155
충북	청주시	1,104	2,131	975	2,389	112	278
경기	안성시	845	1,954	820	1,948	10	31
경기	이천시	1,579	1,951	1,460	2,606	56	162
충북	진천군	1,061	1,928	1,038	2,259	17	50
강원	원주시	474	1,647	272	1,097	136	600
경남	양산시	911	1,634	754	1,658	106	225
충남	아산시	595	1,255	498	1,240	19	42
전북	군산시	2,044	1,243	1,243	1,111	69	171
경기	성남시	195	1,219	188	1,396	2	15
부산	사하구	397	1,196	342	1,180	26	101
경기	광주시	369	1,016	356	1,184	11	25
경기	화성시	431	994	417	1,131	5	25
경남	창원시	545	973	496	1,402	57	103
경기	용인시	693	934	641	1,157	3	14
울산	남구	1,347	831	803	606	225	213
경기	안산시	595	805	440	840	16	31
경북	구미시	287	764	147	758	14	44
전남	여수시	4,838	752	2,141	865	422	239
인천	부평구	318	736	258	846	22	22
경기	포천시	234	720	218	856	12	53
전북	익산시	261	710	228	787	44	201
인천	서구	526	680	266	695	12	9
경기	파주시	305	679	184	796	6	17
경기	군포시	91	651	87	662	4	24
대전	대덕구	312	631	286	828	8	37
충남	논산시	357	596	302	760	43	64
전북	완주군	562	586	491	627	2	5
경기	시흥시	198	547	194	579	1	4
광주	북구	525	527	438	795	73	67
경기	남양주시	332	499	322	610	6	35
경기	여주시	457	489	446	743	2	7
세종		324	473	310	491	3	16

지자체별		생산		판매		수출	
시도	시군구	수량(천톤)	금액(십억원)	수량(천톤)	금액(십억원)	수량(천톤)	금액(십억원)
강원	강릉시	280	472	248	640	31	32
대구	달서구	206	464	180	474	9	31
경기	김포시	152	444	148	506	2	18
부산	강서구	84	424	78	426	6	47
전북	김제시	132	420	120	425	8	27
충북	충주시	206	391	201	471	7	19
충남	공주시	333	361	218	389	39	37
부산	서구	183	351	172	281	8	103
대구	달성군	101	347	86	362	12	31
부산	사상구	104	343	64	214	36	135
전남	나주시	112	338	87	268	7	60
경남	김해시	170	336	162	386	6	17
광주	광산구	183	334	168	432	8	19
인천	남동구	164	325	151	391	2	15
경남	함안군	199	321	119	295	75	83
경기	부천시	97	304	99	372	2	7
경북	경산시	82	295	68	321	10	20
경기	양주시	97	292	84	314	1	5
강원	횡성군	224	279	214	389	9	18
경기	안양시	110	273	101	390	5	12
경북	안동시	625	267	482	241	142	68
경기	오산시	128	264	117	284	3	7
충남	홍성군	369	260	362	246	7	46
강원	홍천군	309	256	278	371	72	21
전북	순창군	152	254	123	315	15	37
충남	당진시	272	251	266	279	0	0
충남	서천군	40	247	40	268	4	19
경남	고성군	33	241	35	270	0	2
제주	제주시	216	241	120	291	4	6
경남	밀양시	103	235	76	150	20	67
충남	금산군	67	232	65	261	1	11
경남	거창군	125	230	91	168	18	64
전북	전주시	85	216	86	242	2	6
충북	제천시	51	214	55	233	7	7
경기	고양시	49	213	47	278	0	0
서울	구로구	200	211	166	225	9	10
전북	남원시	102	209	97	236	5	17
울산	울주군	175	202	163	258	9	13
충남	청양군	72	198	65	220	2	6

지자체별		생산		판매		수출	
시도	시군구	수량(천톤)	금액(십억원)	수량(천톤)	금액(십억원)	수량(천톤)	금액(십억원)
부산	기장군	46	197	48	233	1	10
전북	정읍시	56	194	50	200	0	1
전남	해남군	67	194	63	217	3	4
경북	포항시	54	190	53	217	1	8
전남	고흥군	57	186	24	89	24	89
부산	동구	235	179	225	203	-	-
충북	괴산군	49	172	45	175	1	3
경북	영천시	76	165	71	182	5	11
강원	춘천시	87	163	86	243	2	22
전남	장성군	79	160	75	192	3	16
전남	목포시	25	158	23	130	1	33
충북	증평군	42	157	35	208	0	0
경북	경주시	70	151	66	177	1	1
경남	사천시	28	146	26	144	0	4
서울	강서구	10	145	2	13	0	0
강원	속초시	18	136	16	146	1	17
서울	종로구	40	134	36	186	-	-
충북	옥천군	74	134	72	143	2	5
충남	부여군	22	132	19	179	2	14
서울	성동구	49	132	48	172	0	0
충남	보령시	28	123	26	133	1	14
대구	북구	38	122	40	159	0	0
전남	담양군	59	113	57	162	1	2
경기	수원시	98	113	96	149	0	1
경남	통영시	12	111	9	107	3	24
경북	상주시	27	107	25	87	1	23
충남	예산군	31	107	28	128	1	3
전남	순천시	52	106	48	138	4	11
충북	보은군	24	103	18	88	6	29
경북	칠곡군	55	102	41	107	13	11
대전	유성구	17	98	10	133	0	7
제주	서귀포시	46	95	45	101	1	3
전북	부안군	25	94	23	103	0	7
전북	고창군	16	91	16	107	0	2
경북	문경시	40	89	38	94	0	1
경남	창녕군	64	88	64	108	1	5
경기	하남시	18	86	17	116	0	2
경북	김천시	28	86	27	109	2	2
충북	영동군	50	86	45	97	3	6

지자체별		생산		판매		수출	
시도	시군구	수량(천톤)	금액(십억원)	수량(천톤)	금액(십억원)	수량(천톤)	금액(십억원)
서울	송파구	10	84	10	70	0	0
전남	무안군	67	83	55	80	1	4
경기	의왕시	13	82	13	316	0	1
부산	남구	80	81	81	94	0	0
경북	청도군	26	80	21	64	4	22
전북	임실군	29	80	29	89	0	1
경기	가평군	25	75	21	82	3	8
경남	함양군	49	74	22	72	35	26
경남	진주시	19	74	18	80	1	9
충남	계룡시	33	72	32	82	1	2
전남	신안군	22	69	21	62	1	44
서울	영등포구	7	69	5	67	0	1
인천	강화군	16	62	15	84	1	3
전남	영광군	11	62	11	79	0	1
경북	고령군	29	62	29	69	0	0
인천	동구	80	61	79	71	-	-
전남	구례군	11	61	10	62	0	0
경남	산청군	57	60	56	87	0	2
충남	서산시	80	60	22	65	0	0
경북	예천군	143	58	107	58	37	13
대구	동구	25	58	18	70	0	0
전북	진안군	10	52	9	54	0	1
전남	강진군	8	52	6	48	1	10
경북	성주군	33	51	33	60	0	0
강원	철원군	15	51	16	71	0	0
경북	영덕군	9	50	7	37	1	13
경남	거제시	14	49	12	42	2	17
경남	하동군	6	49	5	60	0	2
부산	해운대구	45	49	45	55	0	0
인천	남구	13	48	12	58	0	1
경기	동두천시	23	48	23	54	0	0
경북	의성군	18	47	12	46	5	12
경북	군위군	84	47	82	53	4	1
부산	금정구	14	44	14	48	0	4
경북	영주시	14	44	13	51	0	2
강원	동해시	14	43	14	47	0	0
부산	영도구	11	40	10	45	0	1
경기	연천군	12	40	12	42	0	0
전남	장흥군	7	40	6	46	0	3

지자체별		생산		판매		수출	
시도	시군구	수량(천톤)	금액(십억원)	수량(천톤)	금액(십억원)	수량(천톤)	금액(십억원)
대전	동구	26	40	25	49	0	0
강원	영월군	12	39	11	44	1	0
서울	금천구	23	39	23	67	0	0
대구	서구	12	39	12	47	0	0
강원	평창군	14	39	13	49	0	1
경남	의령군	17	38	21	98	1	1
전남	완도군	4	38	3	38	0	5
인천	계양구	14	37	14	45	0	0
경기	양평군	5	37	5	42	0	3
경북	울진군	6	36	5	27	1	7
전남	함평군	14	36	14	39	0	2
경북	영양군	3	33	3	34	0	1
경기	광명시	8	33	7	41	-	-
충남	태안군	13	32	13	33	0	5
강원	양양군	8	31	8	32	0	5
경북	봉화군	16	30	15	31	0	0
강원	고성군	6	29	5	27	0	2
경북	청송군	6	29	6	31	0	0
강원	인제군	18	29	13	34	0	1
경기	구리시	8	28	7	50	0	1
경남	합천군	12	28	12	36	0	0
강원	태백시	9	28	8	36	0	0
서울	도봉구	32	28	32	39	-	-
대전	중구	10	26	10	32	0	0
전북	장수군	7	24	7	28	0	0
광주	서구	6	23	6	29	0	0
전북	무주군	6	23	6	24	1	2
강원	정선군	13	22	12	23	0	0
대전	서구	4	20	3	26	0	0
전남	보성군	3	20	2	26	0	0
전남	화순군	10	19	13	27	0	0
부산	부산진구	5	19	5	25	-	-
서울	강동구	16	18	16	28	0	0
서울	동대문구	3	18	3	24	0	0
전남	영암군	8	18	7	20	0	0
인천	연수구	3	17	3	21	0	0
충북	단양군	17	17	17	22	-	-
전남	광양시	4	17	4	21	0	2
서울	종랑구	14	17	14	19	0	0

지자체별		생산		판매		수출	
시도	시군구	수량(천톤)	금액(십억원)	수량(천톤)	금액(십억원)	수량(천톤)	금액(십억원)
울산	북구	10	17	10	22	-	-
서울	강남구	3	16	2	24	-	-
강원	양구군	5	16	4	25	0	1
대구	수성구	5	16	5	24	0	0
경기	의정부시	9	16	8	21	0	0
서울	은평구	15	15	15	25	0	0
부산	수영구	1	14	1	17	0	0
서울	서초구	2	13	2	16	0	0
광주	동구	2	11	2	15	0	1
서울	마포구	2	11	2	17	0	0
경남	남해군	2	10	2	15	0	0
서울	서대문구	1	10	1	15	0	0
서울	용산구	1	10	1	16	0	0
광주	남구	2	9	2	15	0	0
서울	성북구	4	9	3	15	-	-
강원	삼척시	1	9	1	11	-	-
부산	북구	2	8	2	9	0	1
전남	진도군	1	8	1	10	0	0
서울	동작구	1	8	1	9	-	-
서울	양천구	2	7	2	12	-	-
대구	중구	1	7	1	12	-	-
부산	연제구	10	7	10	13	-	-
서울	중구	1	6	1	8	-	-
부산	중구	1	5	1	6	0	0
경북	울릉군	1	5	1	6	0	0
서울	광진구	1	5	1	7	-	-
대구	남구	1	4	1	6	-	-
서울	노원구	1	4	1	6	0	0
강원	화천군	2	4	2	6	0	0
부산	동래구	1	4	1	6	0	0
서울	강북구	1	4	1	5	0	0
전남	곡성군	1	4	1	5	0	0
경기	과천시	0	3	0	4	-	-
울산	중구	1	3	1	4	-	-
서울	관악구	1	3	1	4	-	-
인천	옹진군	0	1	0	2	0	0
울산	동구	0	1	0	1	0	0

임업의 활성화와 재해예방을 위한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방안

2024. 9. 25.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임업의 활성화와 재해예방을 위한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방안 요약

□ 배경 및 필요성

- (탄소중립) 산림탄소흡수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관리 중요성 증대
- (산림재난) 재난의 예방·대응을 위한 임도 등 인프라의 역할 강화 필요
- (노동력·안전) 산업특성 및 인구감소로 인한 임업노동력 부족 문제 심화
- (산림자원성숙) 조림을 통해 산림이 울창해졌지만,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이 균형을 이루는 체계는 미흡

□ 추진과제

- (임도) 임도법 제정, 임도망 DB 등 선진국형 임도시스템 구축
- (법률) 임도의 체계적 설치·관리를 위한 ‘(가칭)임도법’ 제정

영역	관련 법·제도 개선 과제
1. 유형	· 중요노선에 대해 국공사 포괄하여 지정·관리하는 ‘국가임도’ 제도 도입 · 산불진화임도보다 큰 규모의 (가칭)산림산업임도 신설 검토
2. 계획	· 국가·지자체의 임도 계획 의무를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3. 예산	· 임도 예산지원 조항을 법률에 규정
4. 관리체계	· 배수관 매설 등 주요 공정에 ‘책임감리제’ 도입 검토 · 재해에 강한 임도 설치를 위해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강화 · 임도 복구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5. 전담기관	· 임도설치 대폭 확대 및 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임도전담기관 지정

- (기술) 임도망 정보시스템 구축 및 R&D 강화
- (인식) 임도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지지 확보 강화
- (임업기계) 선진국형 첨단 임업기계화 및 자동화 달성을 위한 전략 마련
* 맞춤형/고성능 임업기계 개발, 임업장비의 보급 및 저비용 대여 시스템 마련
- (기술인력) 임업기술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전략 마련
* 특성화학교 임업기술 교과 운영, 은퇴자 활용 임업기술교육 인력 확보

□ 향후계획

- 안전 부처 송부 및 임도 중심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론화 실시



목 차



I. 배경 및 필요성	109
II. 현황 및 문제점	111
III. 추진과제	
1. 임도체계 개선을 통한 선진국형 임도시스템 구축 ..	114
2. 선진국형 첨단 임업기계화 및 자동화 달성을 위한 전략 마련	117
3. 임업기술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118
IV. 기대효과	119
V. 향후계획	119

I. 배경 및 필요성

< 탄소중립 및 산림재난 대응 >

□ (탄소중립) 산림탄소흡수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관리 중요성 증대

○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의 중요성 증가

- *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의 5대 기본방향 및 7개 부문별 과제에 '탄소흡수원(산림 등)' 반영
- * NDC 상향안의 '30년 온실가스 배출량 291백만tCO₂('18년 대비 40%) 감축 목표 준수 (관계부처 합동, '23.4.) 및 산림부문이 11% (총 32백만산림경영 23.9백만tCO₂, 신규/재조림 0.1, 목제품 활용 1.5, 산림바이오매스 1.5, 국외 산지전용 억제 5) 기여 목표

○ 탄소중립을 위해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임도·임업기계 등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한 환경분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합의**(21)

- *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합의문('21.10) 제3항 : "... 산림순환경영을 위해 **임도와 임업 기계 등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21.7~10): 산림청의 '탄소중립 전략(안)'에 대한 비판 제기에 따라 임업단체, 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산림청, 농식품부, 환경부 등 총 19인의 위원이 3개월간 총 22회 회의를 개최하고,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 목표에 합의(참고 6)

□ (산림재난) 재난의 예방·대응을 위한 임도 등 인프라의 필요성 증대

○ (재난예방)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 등 산림재난의 강도가 증가*하여 숲가꾸기 등 적절한 산림관리**를 위한 산림경영 인프라인 임도 필요성 증대

- * 기후변화로 극한 산불은 '30년까지 14%, '50년까지 30%, '00년까지 50% 증가 전망(UNEP, 2022)
- ** 숲가꾸기를 할 경우 수관화 현상을 줄이고, 숲의 수원함양에도 도움이 되어 **산불 감소에 효과적**유엔환경계획(UNEP), 지나치게 밀생, 울폐한 산림에는 숲가꾸기를 해야 **산불 위험성 감소**미국산림청(USFS)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보고 23-17, '23)

○ (재난대응) 산불 대응을 위해 진화장비·인력의 신속한 투입이 중요

- * 임도(3.92km)가 있는 합천산불의 야간진화율(10% → 92%)과 임도가 없는 하동산불의 야간진화율(46% → 63%) 차이가 5배 발생('23) ⇒ 진화헬기가 투입될 수 없는 야간산불진화에 임도는 필수 시설
- * 임도를 통한 진화자원 투입시 산불 확산 **예측보다 최대 1/3 수준으로 피해면적 감소**('22.~'23. 대형산불 19건 분석, 한국산불방지협회, 2023)(참고 3)

< 임업노동력 부족 및 안전문제 >

- 산업특성 및 인구감소로 인한 임업노동력 부족 문제 심화
 - 우리나라 산림은 급경사 지역이 많으며, 임업 노동강도가 타 산업에 비하여 높으나 인력의존도가 높음
 - * 우리나라의 산림은 대부분 산악지역에 분포하므로 평지림이 많은 국가보다 임도 설치·임업기계화가 어려움
 - 농·산촌의 인구감소에 따른 공동화·고령화로 인력부족 심화
 - 낮은 임도밀도로 고성능 임업기계를 통한 젊은층의 유입 등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 독일 등 임업선진국은 기계조종수 등 임업이 젊은층의 일자리 역할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임업종사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노령층임
- 임업의 재해율은 0.77('22)로 전체 산업평균(0.66) 이상인 고위험 산업
 - 산림현장의 작업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임도 외 산지 주행시간 감소 필요
 - *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을 통해 위험한 조건에 노출되는 시간 최소화

< 산림자원의 성숙 여건 고려 >

- (산림자원 성숙) 조림을 통해 산림이 울창해졌지만,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이 균형을 이루는 체계는 미흡
 - ha당 임목축적*과 원목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임목축적(m^3/ha) : ('10) 125 → ('20) 165 → ('30) 193 → ('40) 205
 - ** 국내 원목생산량(백만 m^3) : ('15) 4.9 → ('37) 6.4 → ('50) 7.1
 - 벌채량의 본격적인 증가* 및 대경재(大徑材) 생산을 대비한 대형 임업기계 투입 및 목재운반 수요**등 작업인력의 산림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임도의 필요성 증대
 - * 자원육성 정책을 통해 나무의 양은 $165m^3/ha$ ('20)로 OECD 평균($131m^3$)을 상회
 - ** (산림녹화기) 단순히 묘목정도를 운반하는 작은 길 → (목재수확기) 고구조·고규격 임도 필요성 증대(고성능 임업기계 주행 필요, 대형목재의 대량운송)

⇒ 임업의 활성화와 재해예방을 위해 임도·임업기계·기술인력 중심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방안 마련

Ⅱ.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 임도

- (제도) 임도 규정 제정('85) 및 기본계획 최초 수립('88)이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및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21~'30) 수립·시행 중
 - * (주요 제도 개선) : 임도구조개량 도입('99), 임도타당성평가 제도 도입('01), 테마임도 도입('09), 중앙 및 지역기술자문단 운영 제도 도입('18)
 - ** (계획) 전국 임도시설 기본계획('88), 제2차('96), 제3차('01), 제4차('10), 제5차('20)
- (임도밀도) 임도를 지속 확충하여 **4.11m/ha('23)**이나 우리나라 산림에 필요한 기본임도 밀도(**6.8m/ha**) 대비 60% 수준에 불과
 - 임도확충(km) : ('23까지) 25,848 → ('27목표) 36,907<11,059km 확충>
 - * 임도 1km 신설 시 최대 산림 60ha(양안 300m)를 경영 가능한 것으로 분석(국립산림과학원 '20)
 - 임도밀도(m/ha) : ('23까지) 4.11 → ('27목표) 5.87<1.76m/ha 증가>
 - * 주요 산림관리국 임도밀도(m/ha) : 독일 54, 오스트리아 50.5, 일본 24.1 등
- (유형) 산불진화임도, 간선임도, 작업임도로 구분하여 개설·관리
 - 임도 종류별 노폭 : (산불진화) 3.5~5.0m (간선) 3m이상, (작업) 2.5~3.0m
- (임도망 연결성) 공도와 임도 간의 연결성이 낮고, 국가^{산림청}·지방^{지자체} 임도 관리기관이 달라 임도간의 연계성도 낮음
 - 설계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제 속도로 간선임도 역할에 부족
 - * 간선임도 설계기준 20km/hr에 비해 차량 속도는 대략 9~10km/hr 수준으로 임업 경영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간선임도 역할에 한계(서울대 산학협력단, 2021)
- (타당성) 임도 신설시 임도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사전에 임도 타당성 평가 실시

□ 임업기계

- (제도) 임업기계화 기본계획('96~'05), 임업기계장비 활성화 계획('16~'20) (제1차)에 이어, 현재 제2차 임업기계화계획('21~'25) 수립·시행

* 농업분야('79)보다 최초 계획수립 연도('96)가 늦으며, 임업기계화 계획 수립 의무는 '17년에 신설

◆참고: 농기계 관련 계획

- 제1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79~'96) 수립 이후, 제9차 계획('22~'26) 수립·시행 중

- (보유대수) 보급임업기계 총 보유대수는 16천대이며, 산림청 소속기관(22.1%), 지방자치단체(66.7%), 산림조합(11.1%) 보유 <산림임업통계연보 제53호('22년 기준)>

* 유형별 대수(단위: 천대): 임도(0.05), 벌목^{임목생산}(7.4), 조림육림(2.3), 목재가공(0.7), 산림보호(4.6), 양묘(0.05), 행정(1.2)

** 하베스터, 가선집재기 등 선진화된 임업기계는 목재수확 작업에 주로 활용되지 않으며, 이는 장비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전문인력 부족, 장비의 숙련도가 낮기 때문(국립산림과학원 연구보고 23-24, '23)

- (지원) 임업기계구입 용자제도 운영 및 임업기계지원센터 대여사업 실시

* 용자: 실소요액 한도, 금리 3%, / 임업기계지원센터: 총 7개소(훈련원(강릉, 진안, 양산), 지역조합(평창, 산청, 청주, 여주-중부목재유통센터))

□ 기술인력

- (제도) 임업기능인영림단의 고령화*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임업기계 활용 능력은 현저히 낮아지는 추세

- 기능인영림단('23): 국유(1,237명), 민유(1,643명), 법인(4,784명)

* 영림단 61세 이상 근로자 비율(국유 / 민유): ('16) 29.7 / 44.3 → ('21) 52.6 / 57.7%

** 임업기계 숙련도가 높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생산성 저하 및 근로소득 감소

- (기능인양성) 전문조종사 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부재

* 산림사업 안전사고는 경험이 부족한 장년근로자에 집중적으로 발생

** 고도화된 임업기계 작업은 작업방법이 복잡·다양하므로 전문조종사의 양성이 필요

- (임업특성화학교) 작업계획 설계·기계정비 교육 미비 및 현장에 맞는 임업기계기술 교육 부족

*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굴착기·지게차 위주의 기계 교육 실시

- 산림재난·탄소중립에 대응한 임도 확충 및 관리 지원 제도 미흡
 - (제도) 임도의 계획적인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부족
 - 임도 규정의 법적 실행력 부족으로 계획의 추진력·지속가능성 저조
 - 산림 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도 및 산림 내 임도 연결성 제고 필요
 - 임도관리의 전문성을 감안한 사전·사후관리 체계 부족
 - (기술) 임도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임도망도 관리 및 R&D 부족
 - ICT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임도망도 관리 미흡
 - 통합적인 임도관리를 위한 임도망 R&D 추진체계 부족
 - (인식) 임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부족으로 임도 추진 동력 약화
- 고령화·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임업기계 활성화 저조
 - 가파른 지형적 특성·임도 부족으로 자생적인 기계화가 어려우나, 인력위주의 작업구조 개선을 위해 현장에 맞는 임업기계 필요
 - * 임업기계화율(%): ('21) 51.2 → ('22) 44.5 → ('23) 46.6 ('21년부터 산출 시 기계톱 제외)
 - 임업계 고등교육에서 임업기계 숙련을 위한 장비 지원 부족
 - * 하베스터, 펠러번처 등 임업전용기계보다 지게차, 굴착기 등 범용기계에 집중
 - 일반 농업기계에 비해 임업기계의 도입 비용이 높아 임업종사자들의 자가 구입이 어려우나, 현행 대여제도의 실효성이 낮음
 - * 임업기계 구입비(하베스터: 약 3~7억원) / 대여기관: 산림조합 임업기계지원센터 7개소
 - ** 보급임업기계장비 대여 경험: 국유림영림단 70%, 민유림영림단 7%, 원목생산업 (겸업 18%, 전업 28%)(국립산림과학원 연구보고 23-24, '23)
- 전문인력의 상시적인 부족 현상 지속으로 임업기술 발전 저조
 - 임업기계조종사 등 임업분야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지원·유인체계 부족
 - * 기존 인력도 안정적 소득 등의 이유로 건설 분야로 이탈하는 경우 다수
 - 신규인력 진입 부족으로 기존 임업기술의 전수체계 미흡

Ⅲ. 추진과제

1 임도체계 개선을 통한 선진국형 임도시스템 구축

□ 임도의 체계적 설치·관리를 위한 ‘(가칭)임도법’ 제정

○ (유형) 국가임도 지정제도 도입 및 임도 유형 확대

- (국가임도) 임도 연결성 증진을 위해 중요노선에 대해서 국·공·사유림을 포괄하여 지정·관리하는 ‘국가임도’ 제도* 도입

* (現) 소유[국(산림청, 기타 부처 등), 공(시·군·구), 사] 여건에 따라 분절 → (改) 임도 연결성 확보

- (유형신설) 임업기계화 및 산림재난 대응을 고려하여 현행 산불진화 임도보다 상위 개념의 ‘(가칭)산림산업임도’ 도입* 검토

* (임도유형) 3 → 4개, (유효너비) (가칭)산림산업임도(산림산업도로)^{신설} 5m 이상

구분	현행		개정
1~2차선(검토)	(신 설)		(가칭)산림산업임도(5m 이상)
1차선	산불진화임도 (3.5~5m)	⇒	산불진화임도 (좌동)
	간선임도 (3.0m)		간선임도 (좌동)
	작업임도 (2.5~3.0m)		작업임도 (좌동)

○ (계획) 법률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도계획 의무 규정

- 전국임도계획^{10년} 및 시·군 단위의 임도계획^{5년} 수립 법률로 상향
- 개설 전년도에 수립하는 사업계획^{1년}에 설계·타당성평가 실시 포함

구분	현행(시행규칙에 규정)		개정(안)(법률에 규정)
국가	전국임도기본계획(10년)		전국임도기본계획(10년)
시·도	시·도 임도 설치계획(5년)	⇒	(좌동)
시·군	시·군 임도 설치계획(5년) * 훈령에 규정		시·군 임도 설치계획(5년) * 훈령으로 운영

* (유의사항) ① 공도에서 산림 내까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임도망도 계획 수립.

② 안전성이 확보된 임산물 운반로의 경우 일부 임도화 실시

<참고 사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시도·군도 이상의 도로를 중심으로 관할 구역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 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제7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도로의 정비계획 (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도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도로의 노선 지정)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는 그 노선을 지정하여야 한다.

○ (사업지원) 임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계획에 따른 시공·사후 관리 등 **사업비 확보·반영 조항 법률에 규정**

* 최소수량: 연간 1,164.6km 수준[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21.~’30.)]

<참고 사례: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도로법 제86조(비용의 지원 등)	③ 제2항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지원지방도와 대도시권 교통혼잡 도로의 도로관리청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 하여야 한다.

○ (관리체계) 사후관리를 포함한 임도관리 전(全) 단계에서 **관리체계 강화**

- (시공감리) 임도 시공감리 대가 현실화 및 임도유형·규모에 따른 ‘책임감리제’* 도입 검토

* (現) 월 4회 비상주 감리 → (改) 주요 공정 책임감리 도입(배수관 매설, 옹벽·석축 설치, 골막이 시설 등)

- (사후관리) 재해에 강한 임도 설치를 위해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강화**
 - 임도 안전성 담보를 위해 **노후임도 구조개량·유지보수 등 적시 시행**
 - **체계적인 점검***을 통한 유지보수 계획 수립 등 품질관리 시스템 도입

* 점검유형: 일상점검, 정기점검(연 2회 이상), 긴급점검(장마철 이전, 집중호우 및 산불 등 재해 발생 후)

- (복구) 재해발생 후 **임도 복구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현재 임도 구간 내 복구를 위한 복구조사비 미반영(352백만원/km 임도복구비에 설계감리비 포함, (‘22) 209백만원/km)

- (전담기관) 임도 설치의 대폭 확대 및 타당성평가·사후관리 등* 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임도관리 전담기관’ 지정**

* (예) 타당성평가 수행: (現) 민간 참여 ‘평가위원회’ 구성 → (改) 임도전담 공공기관 시행

** 「산림재난법」(24.6 정희용 의원 발의)에 포함된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지정 등 다양한 방향 강구 / 임도 설치 확대를 위해 장기적으로 채권 발행, 녹색자금 활용 등 추가 자금 조달방식 마련 검토

□ (기술) 임도망 정보시스템 구축 및 R&D 강화

- (정보시스템) 체계적인 임도관리를 위해 임도망도 DB 구축* 및 노선데이터 오류 방지체계* 마련

* DB: 임도 유형별 구분, 시공사·시공연도 등 속성정보의 누락·부재 등 정합성 개선

** 오류방지체계(안): (시공사) 임도 준공노선 데이터 입력. (감리자) 검토·승인, (산림청/위탁기관) 최종 승인

- (R&D) 임도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 (연구인력) 임도 계획·설계·유지관리의 체계적 연구를 위한 인력 확충*
- (노선설계) 임도 계획·설계 시 효율성·안전성 높은 노선 선정을 위해 임도노선 설계·선정 프로그램 개발*·보급

* 기존 공도·임도망도 반영 및 산림규모·임도유형별 설계가 가능한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및 주기적 업데이트 실시

- (ICT 기술) 항공·차량 LiDAR*, 산림위성, 빅데이터 등 유관 기술의 임도관리 적용연구 강화

* LiDAR 이용 정밀지형정보 취득을 통해 ▲정밀 노선 선정, ▲설계·시설기준 준수 여부 판단, ▲적정 토공물량 산출 등 가능

- (신공법) 장기간 유지보수·노체 안정성 개선 등에 효과적인 신공법 개발을 위한 산림토목 R&D 추진 검토

□ (인식) 임도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지지 확보 강화

- 산림재난·탄소중립 관련 교육에 임도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포함

* 산림재난: 산불진화차량·장비 신속한 접근, 토석류 피해 저감으로 2차 피해 방지
탄소중립: 숲의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한 산림관리 효율성 제고

- 역 광고판 및 산불조심 표지판 활용 캠페인 실시, 임도 개설 우수 사례 발굴 경진대회, 테마임도 걷기 행사 추진

* 참고사례: (국토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도로 아이디어·설계 공모전’ 실시

-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임업기계 개발 및 고성능 임업기계화 추진
 - 현장과 유사조건에서 시험 가능한 테스트베드(5,000ha 이상)를 권역별로 조성하여, 자동화·무인화 기술을 적용한 맞춤형 임업기계 개발
 - 경사면 전용 하베스터, 소형 벌목기계 도입 등 소형화되고 기동성이 뛰어난 임업기계 개발
 - * 고성능 목재수확 기계장비 개발 연구 및 보급형 소규모 목재생산 기계화 시스템 등
 - 특성화고 중심 고성능임업기계(및 시뮬레이터) 신규 도입·운영·유지 보수 지원 검토
 - * 특성화고 우선 지원 후 대학교 학슬림 지원 추가 검토
 - 산림분야 클러스터·단지 도입 시 임업기계화 부문 세부계획 마련
- 임업장비의 보급 및 저비용 대여 시스템 마련
 - 저비용 대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규모 임업 종사자들도 기계화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기계 보급 및 대여 시스템 개선
 - * 기존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지원센터 외 국유림관리소 등 2차 소속기관을 임업 기계장비 대여 거점화로 공익적이고 접근성을 개선하여 민간 임업기계화에 기여
 - 3개월 이상 장기 임대 활성화를 위한 혜택 부여 검토
 - * 임업기계는 주로 농업기계에 비해 규모가 큰 대형기계로 단기 임대 시 효율성이 낮고, 운반을 위한 트레일러 사용이 필수적
 - 임업기계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내용연수 경과 장비는 폐기·매각 원칙으로 운영하고, 고성능기계 등 신규 임업기계 교체 도입
 - 민간 임업기계 리스·렌탈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 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및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지원센터의 상호 대여·재배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 검토

□ 특성화학교 임업기술 교과 운영 및 산림산업 현장전문인력 지원

- 원활한 현장인력 수급을 위해 산림산업 현장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내 임업기계·산림토목 등 임업기술 교과 편성·운영, 대학생 대상 임업기술 연수 등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 산림분야 특성화고(3개): 청주농고, 산림과학고, 부산 동래원예고
 - ** 대학생 임업기술 연수 : 5박6일 프로그램(임업기계 실습, 산림토목 사례지 견학)
 - 임업기계 인력의 건설부문으로 이탈 억제 및 임업기계 조종사 양성을 위한 지원 수당·바우처 도입 검토
 - * 참고사례; 산업통상자원부 '조선산업 현장전문인력 양성사업'
 - ** ①조종사 수당: 훈련수당 지원(월 100만원), 채용지원금 지원(교육수료자 중 취업자에게 1인당 월 60만원 x 최대 6개월 지급)
 - ②임업인 바우처: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시 임업기계조종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③산주, 국민: 교육실습 장소(산림현장, 현장인근 회의실) 임대 제공 시 지원
- 임업기술 및 산림작업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임업기능인 교육·훈련 추진
 - 임업훈련원 실시 임업기능인 교육과정의 실무 중심 편성으로 임업기술 향상
 - 기능인 영림단에 대한 산림정책·작업기술 등 보수교육 강화로 작업자 안전성 제고
 - 영림단 단장 대상 고용관리연수, 단원 대상 3개월 이상 장기 기계 교육 도입 검토

□ 산림부문 은퇴자를 활용한 임업기술교육 강화

- 은퇴자의 임업기술교육 자문지원 프로그램 운영 검토
 - * 전문성을 가진 은퇴자들의 경험을 활용하여 교수법, 교육내용 품질 향상
- 은퇴자들의 전문지식과 경험,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지역 산림조합·농협·임업분야 단체 등에 지역사회 자문·봉사활동 기회 부여

IV. 기대효과

- ☐ (농산어촌 활성화) 산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농산어촌 소멸위기 대응
 - * 임도 등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으로 임업 활성화 및 국민의 산림복지자원에 대한 접근성 증대
- ☐ (산림재난 대응)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의 적시성 확보로 국민 안전 증진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
 - * 특히, 헬기 등 공중진화자원 활용이 불가한 야간산불 대응에 필수적

V. 향후계획

- ☐ (본회의 처리) 본회의 보고(“24.9.25) 후 관련부처 보고안건 송부
- ☐ (공론화) 임도 중심 산림경영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론화 실시

참고 1

임도 종류 및 개념도

□ 임도 종류별 비교

구분	산불진화임도	간선임도	작업임도
시설 기준 (차이점)	○ 유효너비 : 3.5 ~ 5m * 산불 발생 시 진화차량의 교행을 위한 노폭 ○ 주정차 및 산불대응장소, 차량 교행 장소 (간격 200~300m) 산불지휘본부 설치장소, 취수장 설치 등	○ 유효너비 : 3.0m 이상 ○ 대피소 설치(간격 300m 이내) * 취수장 없음	○ 유효너비 : 2.5~3.0m ○ 목재생산·운반 등 기계화에 필요한 최소규격
대상지	○ 대형 산불의 위험이 높은 지역 또는 대형산불 발생지 인접지역 ○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 또는 민가 주변 등 주요시설물과 인접한 산림	○ 경제림육성단지 등 산림경영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	○ 인공 조림지 등 산림사업이 집중되고, 기계화작업이 시급한 지역
주요 기능	○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설치하는 임도 - 산불 발생 시 방화선 역할 - 진화장비 및 진화인력 투입 통로 - 평상 시 일반인 통행 제한적 허용	○ 숲가꾸기, 목재생산 등 산림경영과 산림정비를 주목적으로 설치하는 임도 - 도로와 도로 및 마을 간 연결 - 산림휴양 및 산림레포츠 등 다목적으로도 이용	○ 일정 구역의 산림사업 실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임도 - 간선임도에서 연결
사업비	○ 단비 : 334백만원/km	○ 단비 : 278백만원/km	○ 단비 : 156백만원/km

□ 임도 개념도



참고 2

임도시설 통계 및 계획

□ 연도별 임도 신설거리(km)



□ 임도관련 주요 계획

○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

- * 건설하고 친환경적 임도를 경제림단지에 집중시설(70% 이상)
- * 고성능 임업장비 및 대형 운송장비에 적합한 구조로 임도 선형 개선

○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21~'30)

- * 정책목표 : 임도의 체계적인 확충과 관리로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 * 임도사업 기술향상으로 임도 안전성 강화
- * 임도밀도 목표량(m/ha): ('21) 3.5 → ('30) 5.5
- * 경제림육성단지 임도밀도 목표량(m/ha): ('20) 5.4 → ('30) 8.9

□ 국가별 임도밀도 현황

국가별	임도밀도(m/ha)	출처
한국	4.11	2024년 산림임업통계연보('23년말 기준)
일본	24.1	2023년 일본 임야청 산림·임업백서
미국(국유림)	9.5	2017년 한국농업과학저널 (한국과 미국의 임도현황 및 정책 비교)
오스트리아	50.5	2020년 Forest 학술지 (관리회계 관점에서 본 임도-오스트리아의 경험적 사례)
독일	54.0	2012년 일본 임야청 산림·임업백서
핀란드	5.8	'세계의 임도'(2018, 사카이 히데오)
캐나다(BC주)	11.3	2022년 British Columbia 홈페이지

□ 산불진화시 임도의 기능

- ① 산불 진화를 위한 진화장비 및 인력의 신속한 진입
- ② 시설 자체 방화선 역할로 산불확산 저지 및 초기 대응 시간 확보
- ③ 임도를 통한 산불발생 감시, 민가 및 기타 주요 시설 등 보호
- ④ 산불발생 이후 등산객 등 산림 내 사람·동물의 대피로로 활용 등

□ 임도의 산불진화 효과(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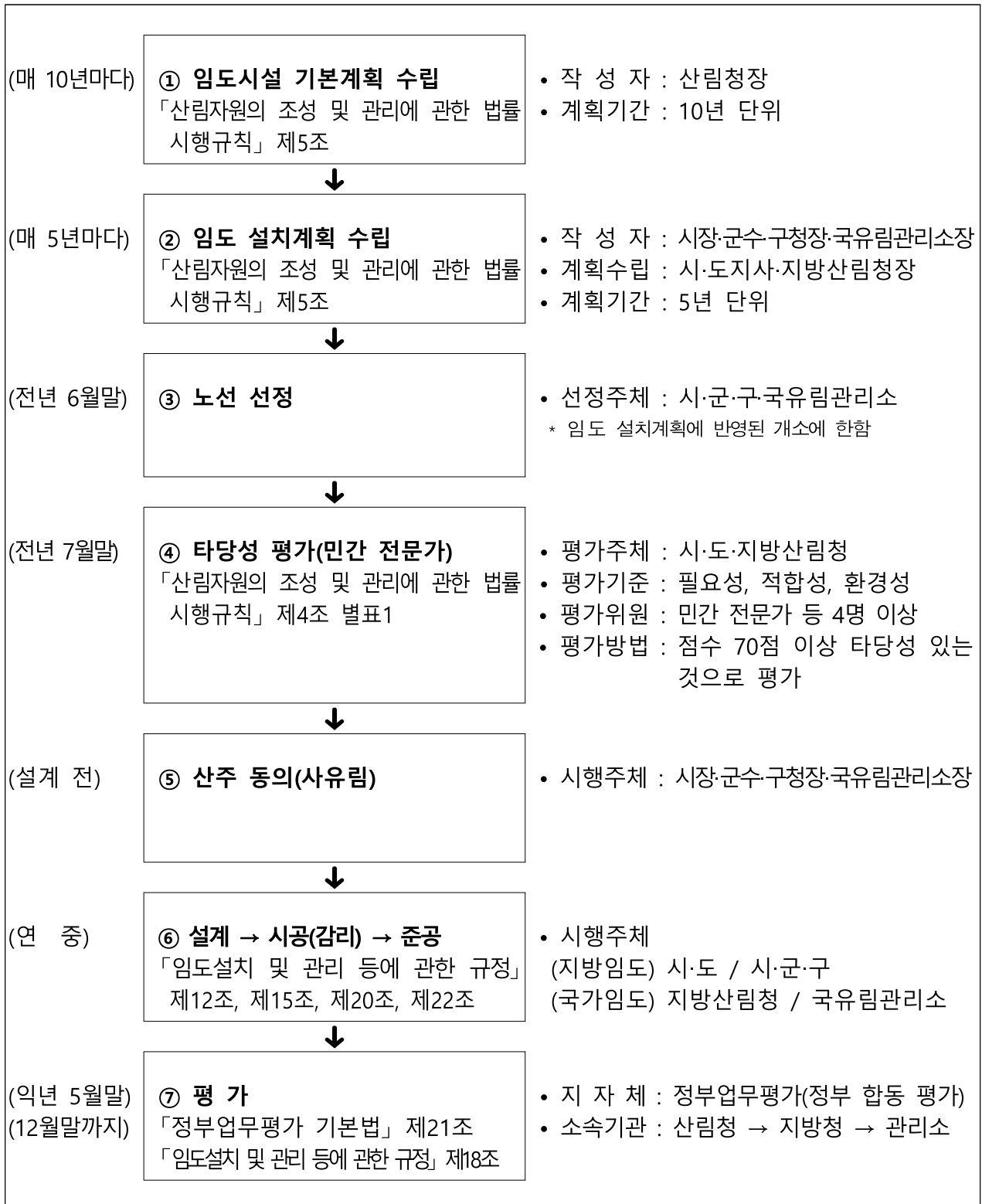
- 임도(3.92km)가 있는 합천산불의 야간진화율(10% → 92%)과 임도가 없는 하동산불의 야간진화율(46% → 63%) 차이가 5배 발생
- 임도를 통한 진화자원 투입시 산불 확산 예측보다 최대 1/3 수준으로 피해면적 감소('22.~'23. 대형산불 19건 분석, 한국산불방지협회, 2023)
- 산지경사 25~45°, 풍속 1~4.5m/s 조건시, 임도폭 6m 일 때가 가장 강력한 방화 차단 기능을 발휘[소프트웨어(PyroSim)에 의한 임도의 방화봉쇄기능에 관한 연구, 2020.]

□ 임업선진국의 임도를 활용한 산불진화 전략(연구 결과)

- (일본) 방화용 임도는 진입 상황, 민가, 과거 및 최근 산불상황, 지형·수계 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九州森林管理局 森林整備課, 2022)
 - * 임야청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방화임도 정비 사업으로 임도 개설 추진
- (미국) 지속적으로 산불 대응(감시, 예방, 접근 등) 개선을 위한 임도 시설 및 유지관리 관련 연구추진(Thompson, 2021)
 - * 미국 콜로라도주에서는 Arapaho-Roosevelt 국유림 내 임도를 활용하여 연료 관리 대상지 선정, 진화자원 효율적 배치 등 진화전략 수립 방법 제시
- (핀란드) 약 13만km의 임도로 산불진화자원의 접근성 향상 및 산불 확산을 저지하는 데 활용(Finnish Forest Association, 2018)
 - * 국토의 60%가 산림이며, 침엽수림이 약 50%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여건이며, 연평균 산불발생 건수는 1,123건, 피해면적은 0.4ha/건으로 주변국보다 낮음

참고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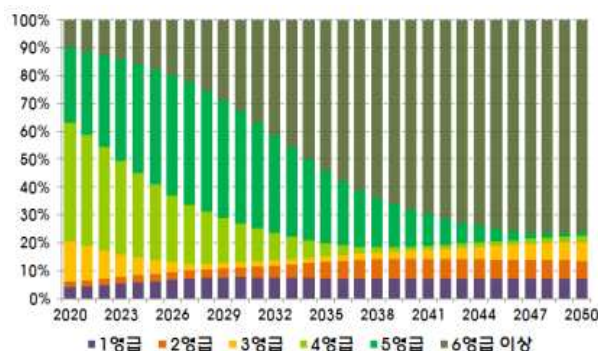
임도사업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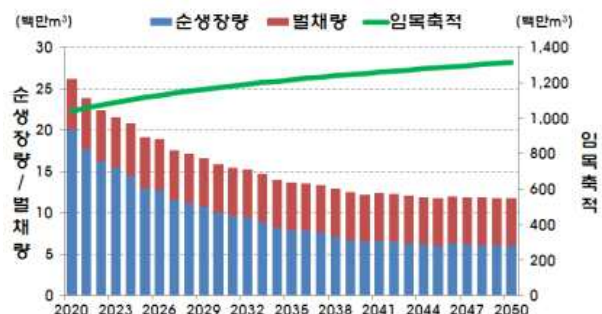
참고 5

산림부문 탄소중립 대응 필요성

-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베고-심고-가꾸는’ 산림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 매년 자라나는 임목생장량의 20~25%만을 생산하여 산림은 점차 고령화
 - 산림을 현재와 같이 관리한다면 산림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하고 순임목생장량이 빠르게 줄어듦 전망(국립산림과학원, 2019)
 - 6영급_(51~60년생) 이상 산림면적 비율(%) : ('20) 10.2 → ('30) 32.7 → ('50) 72.1
 - 고령화로 인한 연간생장량($m^3/ha/yr$) 감소 : ('20) 4.3 → ('30) 2.6 → ('50) 1.9
- ⇒ 고령화된 산림을 벌채하고 어린나무를 심어 산림의 영급을 균등하게 조정하고 순임목생장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산림부문의 장기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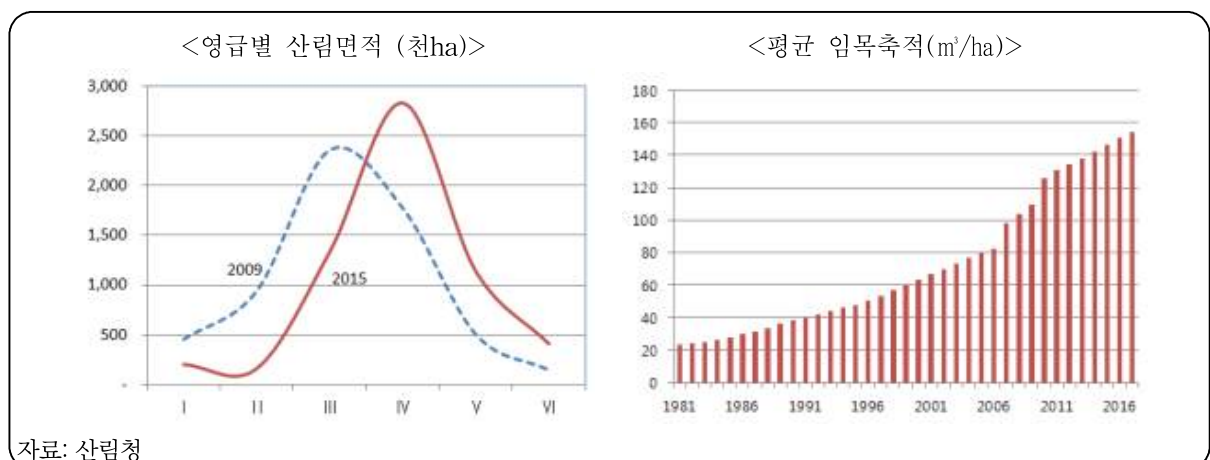


【영급별 산림면적 비율】



【순임목생장량 및 임목축적】

〈자료 . 영급별 산림면적과 평균 임목축적의 변화〉



- '21.7.8일 출범, 본회의(8회), 분과위(4회), 전문가 그룹회의(2회), 운영 소위(8회) 등 총 22회에 걸쳐 협의회 논의 진행
- 구성(20명) : 민간·전문가(임업 8, 환경 8)과 위원장(1) 및 정부위원(3)
 - * 위원장 : 강영진 탄중위(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민참여분과위원장,
 - 정부위원 : 산림청·농식품부·환경부 국장

〈합의문 전문〉

산림청은 2021년 1월,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전략(안)이 산림의 경관, 재해예방, 생태 등 다양한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임업단체, 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등이 참여하는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었다. 7월 8일 출범 이후, 총 7차의 본회의와 2차에 걸친 전문가 그룹 검토회의, 4차의 산림바이오매스 분과회의를 거쳐, 민관협의회는 산림이 다양한 가치를 지닌 국가 자원이자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근간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아래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다. 산림청은 아래 합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략안을 수정한다.

1. 당초 전략(안)에서 제시한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는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여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한다.
2. 탄소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으로 벌기령을 낮추는 것과 이 벌기령을 적용하는 탄소순환림의 구획·지정 내용은 삭제하고,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강화한다.

3. 위 2항의 산림순환경영을 위해 임도와 임업 기계 등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4.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조림 수종은 환경 적응성, 목재자원 가치, 탄소흡수 능력, 자생 수종을 고려하고, 새로운 수종의 도입이 필요한 경우 생태계 영향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5. 2050년 목재수확량은 목재자급률 제고와 탄소흡수량·저장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목재제품 이용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이용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6. 생산된 목재는 부가가치가 높고 수명이 긴 제품으로 우선 이용하고, 미이용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원으로서 점진적으로 소규모 분산형 산림에너지 공급을 위한 연료로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7. 산림분야 온실가스 흡수량 통계는 IPCC 지침에 따라 산정되고 있으며, 숲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의 연간 성장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2050년 온실가스 순흡수량도 감소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나, 통계의 완결성과 추정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8.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하여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 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9. 사유재산인 사유림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해 산림청은 합당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0. 산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생태·경관·재해 등에 대한 장기 조사 및 모니터링, 통계 산정의 고도화, 학제 간 공동 연구 등을 실행한다.